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3년 9월 20일(수) 오후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일하는시민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1) 발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

(2) 토론

강은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사무국장)

김유경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권순호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사무관)

김보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Contents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인사말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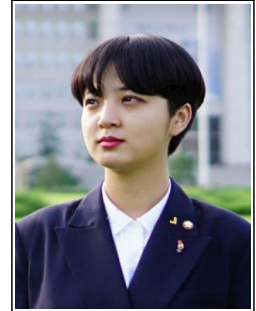
☐☐ 프로그램

1. 발제

문체부 방송3사 프리랜서 활용 실태와 개선방향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고용 및 노동실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	3
--	---

2. 토론

강은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57
전**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사무국장)	91
김유경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97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107
권순호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사무관)	111
김보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115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지상파 방송 3사(KTV, 아리랑TV, 국악방송)에서 받은 ‘프리랜서 인력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송3사 모두 40% 이상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일하는시민연구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문체부 산하 방송 3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노동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프리랜서는 대부분 청년 및 여성이었고,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급, 병가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저임금 구조에다 같은 일을 하지만 방송사별로 20~30만 원씩 임금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노동자성 인정 징표로 만든

설문에서는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이 힘써 주셨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및 유니온센터 이사장님, 토론자로 함께 한 강은희 변호사님,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사무국장님, 김유경 공인노무사님,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님, 권순호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정책과 사무관님, 김보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을 회피하게 하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부터 폐기합시다.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체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노동부는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도 절실합니다. 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산하 방송 3사의 프리랜서 노동자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노동자입니다. 방송 제작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0일(수)

정의당 국회의원 류 호 정



발제1

문체부 방송3사 프리랜서 활용 실태와 개선방향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고용 및 노동실태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

양승서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정책위원)

문체부 방송3사 프리랜서 활용 실태와 개선방향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고용 및 노동실태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

양승서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정책위원)

I. 들어가는 말

- 국내 방송사에는 전통적인 비정규직 이외에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고, 프리랜서 고용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진 바 있음. 2017년에는 방송사 제작현실 토론회(2017.9.20.)와 방송사 프리랜서 작가 관련 국회토론회(2017.3.28.)가 있었고, 최근 국정 감사 프리랜서 문제제기(2017.9.21. 2020.10.26., 2022.10.24)가 있었음.
- 기존 몇몇 방송사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 2022·2023;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2020)에서 나타난 주된 문제점은 △제도적 문제와 근로자성 문제(근로자성 부인, 표준계약서 미체결,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 휴일 휴가, 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등), △비제도적 문제와 노동환경(업무 공간과 비품 등 미사용, 교육훈련과 복지적용 등 차별, 인권 침해적 부당 문제) 등이었음.
- 현재 방송사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비정규직도 고용형태공시 기준인 300인 이상 대기업 언론출판업 내 방송사(MBC, SBS, YTN)만이 주로 확인가능했음.
- 방송실태는 산업정책(방송 고용구조, 외주 방송)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고용구조와 노동실태(독립PD, 스태프, 작가 등)도 일부 직업군에 한정된 상태였음. 물론 방통위나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일부 조사가 진행된바 있음.

-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지원업무 대부분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맡고 있고, 공공부문 방송사도 전체 인력의 절반이 비정규직·프리랜서로 활용됨에도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방송사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15% 남짓 되는 상황임.
 - 민간방송사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방송사조차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개선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과 개선의 지가 미약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음.

- 202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지상파 방송 3사(KTV, 아리랑TV, 국악방송)에서 받은 ‘프리랜서 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8월 기준으로 3사 모두 40% 이상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었음.¹⁾
 - 한편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요 방송사 규모 파악 및 실태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임.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방송 PD, 아나운서, 작가, 스태프나 등 프리랜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글은 <방송사 비정규직 프리랜서 활용 실태와 구조: 문체부 산하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인력 및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문체부 산하 3개 방송사 자료는 류호정 의원실에서 해당 방송사에 요청한 2022년과 2023년 원자료를 분석했음.
 - 설문조사는 2023년 의원실 통해 각 방송사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온라인 조사방식(모집단 342명, 조사 표본 110명, 수거율 32.1%; 여성 73명/남성 36명, 평균 연령 32.2세; 여성 32세/남성 32.6세, 월 소득 221.5만원: 여성 220.3만원/남성 223.9만원)으로 진행된 원자료를 분석한 것임.²⁾

1) 경향신문 2022년 10월 17일 기사(방송 비정규직 눈물 외면하는 정부 방송사들... '무늬만 프리랜서' 착취 만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171106011>).

II. 방송산업 고용유연화와 다층적인 고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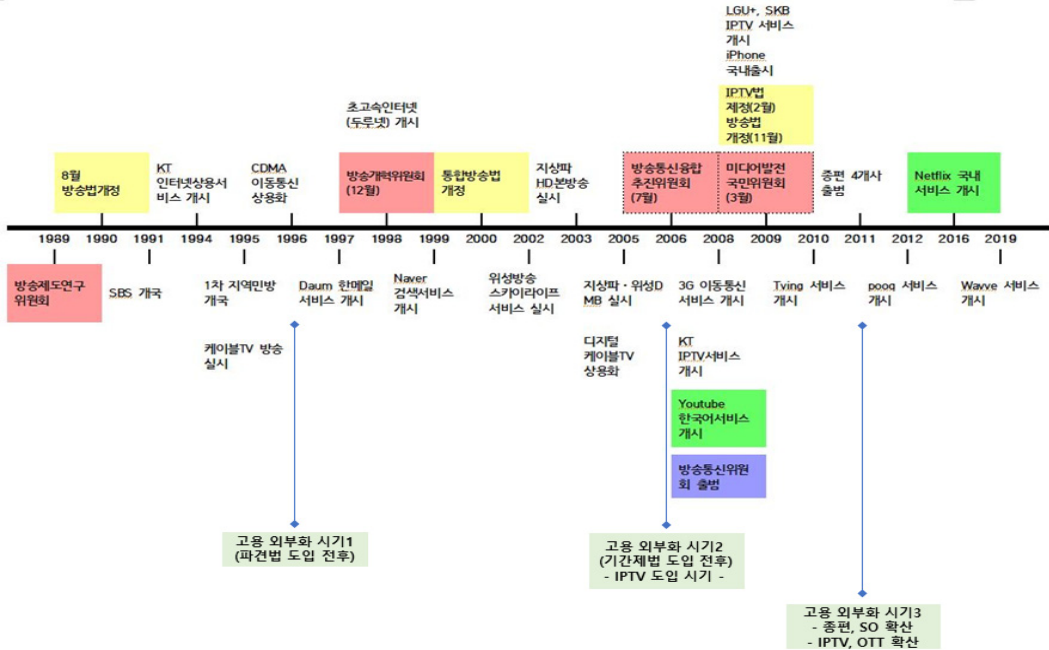
□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현황과 특징

- 그간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제작과정의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주제작과 노동인력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확대됨.
 - 1991년 이후 방송 외주정책은 양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방송사의 수직적 통합 구조를 해체하고 독립제작사의 수는 증가시킴. 이 과정에서 소수의 독립제작사가 다수의 프로그램을 공급함으로써 독립제작사 간의 불균형적 격차가 나타났음.

- 방송산업 구조 변화와 방송 자본간 경쟁 심화는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고용 불안정성을 높였음. 방송사는 각 조직 내 구조와 프로그램 등에 따라 원하청 형태와 고용관계가 다양함.
 - 예를 들면 시사교양 부서의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 구성과 고용구조(방송사 정규직, 자회사 직원, 방송사 계약직, 파견직, 사내도급, 사외도급, 프리랜서 등) 형태가 확인됨.

2) 문체부 3사 방송사 프리랜서는 총 342명이었고, 조사대상 프리랜서는 각 방송사별로 차이(KTV 139명, 아리랑 TV 138명, 국악방송 65명)가 있었음.

[그림] 국내 미디어 산업 변화 흐름과 주요 특징



* 자료 : 미디어 및 방송산업 법체계 및 규제 현황(김동원 2021)에 고용구조 변화 필자 추가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법 통과로 종합편성채널 신설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1년 이후부터 JTBC(중앙일보), TV CHOSUN(조선일보), 채널A(동아일보) 등 종편방송국이 개국한 외적 환경이 고용 규모 영향을 미침.
- 방송산업 전체 종사자 규모는 2008년 5만 1천명에서 2013년 5만 7천명으로 증가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음.

□ 방송산업 취업자 현황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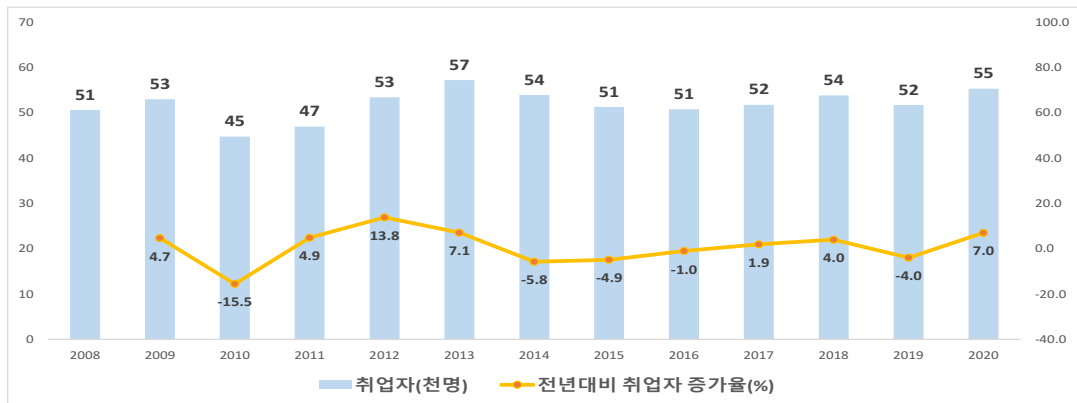
- 국내 방송산업 취업자의 경우 2019년 대비 약 3천명 증가(2019년 대비 2020년 7.0%)했음. 이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사업자의 성장으로 방송산업 종사자와 방송사업자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2020).

- 200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방송산업 종사상지위별 변화 특징은 계약직은 감소하고, 프리랜서와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2008년대비 2020년 계약직은 4.1천명 감소하였고(2008년 대비 2020년 52.0% 감소), 단시간 노동자는 1.2천명 증가(2008년 대비 2020년 80.3% 증가), 프리랜서는 2.8천명 증가(2008년 대비 2020년 166.3% 증가) 했음.

○ 2008년 대비 2020년 방송산업 불안정 노동자(계약직+단시간 노동자+프리랜서) 구성 비율은 프리랜서와 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용불안정성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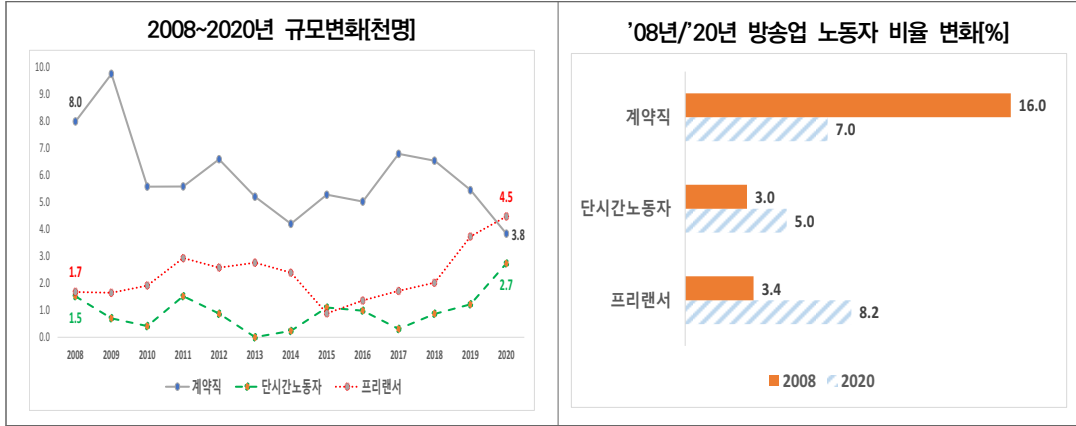
- 2020년 방송산업 불안정 노동자 규모는 11천명으로, 2009년 12.1천명을 정점으로 2014년 6.8천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 추세임.

[그림 2-2] 방송산업 취업자 변화(2008~2020년)



자료: MDIS, 2008-2020 지역별고용조사 A형 상반기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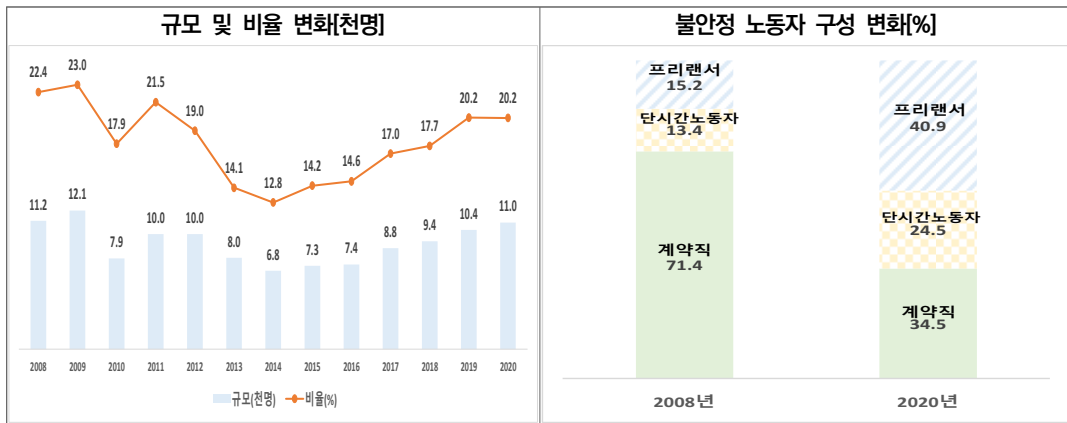
[그림 2-3] 방송산업 계약직·단시간노동자·프리랜서 고용 변화



자료: MDIS, 2008-2020 지역별고용조사 A형 상반기 원자료.

주 : 프리랜서는 연구자가 비임금노동자 대상 추정 규모임.

[그림 2-4] 방송산업 불안정 노동자 고용변화



자료: MDIS, 2008-2020 지역별고용조사 A형 상반기 원자료.

□ 방송산업 비정규직 규모와 특징

- 국내 방송사 고용형태별, 직종별 현황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방송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2019년 기준 전체 방송산업 종사자는 약 37,553명으로 확인되며 정규직이 891.%(33,477명)이고, 비정규직은 10.9%(4,076명)로 확인됨.

- 방송산업은 영업홍보(16.5%), 제작(12.9%), PD(13.1%), 기술직(11.4%), 기자(10.8%)가 가장 많은 직군·직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전체 직군·직종 중 제작은 비정규직 규모(1,033명)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2021년 방통위에서 조사된 프리랜서 규모(이찬구 외, 2021)에서 방송사 13곳의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규모를 일부 추정할 수 있음. 2021년 기준 프리랜서는 2,953명으로 32.1%를 차지했고, 파견직은 1,769명(19.2%), 용역업체 1,406명(15.3%), 자회사 1,333명(14.5%), 계약직은 1,154명으로 12.5%를 차지했음.
- 2021년 방송산업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는 2021년에 부과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실시하여 각 사별 비정규직 근로실태 자료를 취합되었음. 2021년 취합 대상 사업자는 총 13개 사업자로 전년 조사 대상에서 3개 사업자가 추가되었음.³⁾
- 한편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는 전송 방식과 권역, 지배구조, 자원, 설립 근거에 따라 약 50개 남짓으로 파악됨. 방송 전송 방식에 따라 지상파와 비지상파(PP)로 구분되고, 지상파는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됨(<표 2-1>).
- 공공기관 지배구조 특성과 동일하게 방송사도 정부기관과 투자출연기관 형태로 구분되고, 자원 형태와 설립 근거(법률)에 따라 방송사가 구분되는 형태임. 대표적으로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특수법인)이며, 국회방송은 국회 운영 방송임.
- 이 글에서 분석대상인 문체부 산하 3개 방송사(KTV, 아리랑TV, 국악방송)는 지상파와 비지상파에 각각 속한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인력 및 프리랜서 인력 및 고용구조를 분석했음.

3) KBS, MBC, SBS, EBS, KNN, MBC경남, TBS, 대전MBC, 대전방송, 부산MBC 등 10개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조사하였으며, CBS, 국악방송, 극동방송 등 3개사는 2021년에 추가된 사업자로 라디오방송부문에 한정됨(이찬구 외, 2022).

〈표 2-1〉 한국 공공부문 방송사 지배구조 유형과 특징

전송방식/권역	방송사	지배구조	재원	설립근거	
전국	KBS	공사	수신료, 방발기금, 상업재원	방송법	
	MBC(서울)	방송문화진흥회 정수장학회	상업재원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공사	수신료, 방발기금, 상업재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지상파	지역	KBS지역총국(9개사)	공사	수신료, 방발기금, 상업재원	방송법
		지역MBC(16개사)	주식회사 (서울MBC계열)	상업재원	상법
		국악방송(R)	재단법인 (공공기관)	문체부 예산 방발기금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TBN(도로교통공단)	공공기관	경찰청 예산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TBS FM·TBS eFM	재단법인	서울시출연금 캠페인, 상업재원	서울특별시조례
		부산영어방송	재단법인	부산시	부산광역시조례
		광주영어방송	재단법인	광주시	광주광역시조례
		아리랑 제주FM	재단법인	문체부 예산 방발기금	민법
		공동체라디오(7개사)	사단법인	정부공모사업 후원금 등	방송법
비지상파 (PP)	아리랑국제방송	재단법인	문체부 예산 방발기금	민법	
	KTV	문체부	문체부 예산	-	
	국회방송	국회	국회	-	
	국방TV	국방부	국방부 예산	-	
	OUN방송대학TV	교육부	-	-	
	한국직업방송	산업인력관리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예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국악방송(PP)	재단법인 (공공기관)	문체부 예산 방발기금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연합뉴스TV	연합뉴스/뉴스통신진흥 회	문체부 예산 상업재원	상법 뉴스통신진흥회법	
	TBS TV	재단법인	서울시출연금, 상업재원	서울특별시조례	

자료 : 김동원(2020), 「한국방송의 공적영역 지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봄학술대회 발표자료.

Ⅲ.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고용 인력과 프리랜서 활용 현황

1. 방송사 3사 인력 현황

□ 방송사 인력구조 변화 추이 특징(2022-2023)

- 문체부 방송 3사의 작년과 올해 인력구조 변화 특징은 정규직 감소(2022년 51.9% → 2023년 29.8%+8.8%)와 프리랜서 증가(2022년 45.1% → 2023년 52.3%)로 확인됨. 문체부 방송 3사 인력 변화 특징은 도급용역 형태의 위탁 고용이 9.1%(56명 : 아리랑 TV 27명, 국악방송 29명)로 새롭게 증가했음.

〈표 3-1〉 문체부 방송 3사 고용형태별 인력 변화(2022-2023, 단위: 명, %)

	전체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정규직 ⁴⁾	456	51.9	443	49.1	176	50.2	180	56.4	217	53.6	203	46.5	63	51.2	60	43.5	
비 정 규 직	계약직(기간제)	25	2.8	1		3	0.9			19	4.7			3	2.4	1	0.7
	파견	1	0.1											1	0.8		
	도급(위탁)			56	6.2						27	6.1			29	21.0	
	자회사			54	6.0						54	12.1					
프리랜서	396	45.1	348	38.6	171	48.9	139	43.6	169	41.7	161	36.2	56	45.5	48	34.8	
전체	878	100	902	100	350	100	319	100	405	100	445	100	123	100	138	100	

주 : 2022년은 전체 인력 중 KTV 정규직은 공무원 116명, 공무직 60명, 아리랑 TV 217명, 국악방송 63명이었음.

2023년은 전체 인력이 아닌,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 참여 정규직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 현황임.

자료 : 2022년은 류호정 의원실 발표자료 현황이며, '자회사'는 법률상 내부 종사상 지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구분될 수 있음.

4) KTV의 정규직은 각기 법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로 '공무원' (공무원)과 '공무직'(근로기준법)으로 구분되어 있음.

- 첫째,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고용 현황은 KTV(2022년 48.9% → 2023년 43.6%), 아리랑TV(2022년 41.7% → 2023년 36.2%), 국악방송(2022년 45.5% → 2023년 34.8%) 모두 감소 확인됨(〈표 3-1〉). 방송 제작 참여 인력 중 10명 중 7명 이상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있었음(〈표 3-2〉).
- 둘째, 문체부 방송 3사 인력구조 중 제작 참여인력의 직종별 변화는 연출(41명), 작가(65명), 편집(5명), 기술(3명)이 감소했고, 조연출(18명), 촬영(20명), 기타(16명) 직종은 증가했음(〈표 3-3〉).
- 셋째, 문체부 방송 3사 제작 참여 프리랜서의 성별 인력 분리 현상이 확인되며, KTV 여성 55.8%(92명), 남성 28.5%(47명), 아리랑TV 여성 24.7%(95명) 남성 17.2%(66명), 국악방송 여성 37.4%(40명) 남성 7.5%(8명)이었음(〈표 3-5, 6, 7〉).

〈표 3-2〉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각 제작 참여인력 현황(2023, 단위: 명, %)

	전체		KTV 17개 프로그램		아리랑TV 12개 프로그램		국악방송 22개 프로그램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정규직	183	29.8	26	15.8	142	37.0	29	27.1	
비 정 규 직	계약직						1	0.9	
	파견								
	도급(위탁)	56	9.1			27	7.0	29	27.1
	자회사	54	8.8			54	14.1		
프리랜서	321	52.3	139	84.2	161	41.9	48	44.9	
전체	614	100	165	100	384	100	107	100	

*주 : KTV 제작 참여인력 현황은 프로그램의 소속을 특정할 수 없는 기자, 카메라, 음향, 영상, 편집, 음향 등 정규직 111명을 제외한 제작 기본인력(PD, 조연출, 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표 3-3〉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각 제작 인력 직종 변화('22-'23, 단위: 명, %)

	2022		2023		증감 인원 (22-23)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출(CP,PD)	105	26.5	64	19.0	▽41
조연출(AD,FD)	28	7.1	46	13.7	△18
작가	158	39.9	93	27.7	▽65
편집(CG, 자막 포함)	27	6.8	22	6.5	▽5
촬영/카메라	6	1.5	26	7.7	△20
기술(음향, 조명, 송출 등)	9	2.3	6	1.8	▽3
기타(진행, 운전, 경호 등)	63	15.9	79	23.5	△16
전체	396	100.0	336	100.0	▽60

〈표 3-4〉 문체부 KTV 각 프로그램의 직종별 고용형태 인력(2023, 단위: 명, %)

연 번	프로그램	정규직			프리랜서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생방송 대한민국 1부(Live)	1		1	5	9	14	15
2	생방송 대한민국 2부(Live)	1		1	3	11	14	15
3	생방송 정책&이슈(Live)	1		1	3	9	12	13
4	KTV 대한뉴스(Live)	1		1	4	12	16	17
5	KTV 뉴스(Live)	3		3	10	5	15	18
6	국민 리포트			0		2	2	2
7	정책플랫폼 Korea TV 생활&정책	1		1	3	4	7	8
8	살어리랏다 시즌5	1		1	3	5	8	9
9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2		2	2	3	5	7
10	한미동맹 70주년 새로 보는 리버티 뉴스	1		1	1	1	2	3
11	시청자가 만드는 TV 하이큐	1		1	1		1	2
12	온라인 콘텐츠(생방송)	2	1	3	6	8	14	17
13	온라인 콘텐츠(유니크)	1	1	2		5	5	7
14	온라인 콘텐츠(채널운영)		2	2	1	8	9	11

연 번	프로그램	정규직			프리랜서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15	온라인 콘텐츠(숏폼콘텐츠)	2		2	1	5	6	8
16	온라인 콘텐츠(OTT제작)	1	1	2	3	4	7	9
17	온라인 콘텐츠(기획특집)	1	1	2	1	1	2	4
합계(명)		20	6	26	47	92	139	165
비율(%)		12.1	3.6	15.8	28.5	55.8	84.2	100.0

<표 3-5> 문체부 아리랑TV 각 프로그램 직종별 고용형태 인력(2023, 단위: 명, %)

연번	프로그램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합계
		남	여	계	도급(위탁)			자회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Arirang News (1) 오전>	14	12	26			0	9	13	22	3	2	5	52
2	<Arirang News (2) 오후>	15	11	26			0	10	14	24	2	3	5	55
3	Peace& Prosperity	5	1	6			0			0	1	4	5	11
4	The Globalists	10	2	12			0	2		2	5	4	9	23
5	Diplomat Talks	3	1	4			0			0	1	12	13	17
6	1Day 1Korea & PerformArtsReload	3	5	8			0			0	10	16	26	34
7	After School Club & AfterASC	10	2	12	2		2			0	5	9	14	28
8	Simply K-pop Con-Tour	12		12			0			0	32	23	55	67
9	Secret Airlines	3	1	4	1	2	3			0	3	7	10	17
10	I'm LIVE	7	1	8	22		22			0	3	8	11	41
11	Playlist UP :Feel Like 11	12	1	13			0	2	1	3		4	4	20
12	Radio'Clock	10	2	12			0	2	1	3	1	3	4	19
합계(명)		104	39	143	25	2	27	25	29	54	66	95	161	384
비율(%)		27.1	10.1	37.2	6.5	0.5	7.0	6.5	7.5	14.0	17.2	24.7	41.9	100.0

〈표 3-6〉 문체부 국악방송 각 프로그램 직종별 고용형태 인력(2023, 단위: 명, %)

연번	프로그램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합계
		남	여	계	기간제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TV음악풍경		1	1			0			0		1	1	2
2	국악콘서트 판스페셜		1	1			0			0		2	2	3
3	소리를 배웁시다	1	1	2			0	15	1	16	1	7	8	26
4	국악무대 컬렉션		2	2			0			0		1	1	3
5	국악방송 스페셜		2	2			0			0		2	2	4
6	국악플러스		2	2			0			0	1	1	2	4
7	국악무대	2	1	3			0	13		13	1	3	4	20
8	명상요가	1	1	2			0			0	1		1	3
9	창호에 드린햇살	1		1			0			0	1	2	3	4
10	국악산책	2		2			0			0				2
11	문화시대	1		1	1		1			0		2	2	4
12	바투의 상사디아	2		2			0			0		1	1	3
13	노래가 좋다			0			0			0	1	3	4	4
14	맛있는 라디오		1	1			0			0	1	2	3	4
15	FM국악당		1	1			0			0		1	1	2
16	글과 음악의 온도			0			0			0		3	3	3
17	최고은의 밤은 음악이야		1	1			0			0	1	2	3	4
18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1	1			0			0		2	2	3
19	연구의 현장	1		1			0			0		1	1	2
20	음악의 교차로		1	1			0			0		2	2	3
21	고전, 지혜로 만나는 세계		1	1			0			0		1	1	2
22	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		1	1			0			0		1	1	2
합계(명)		11	18	29	1	0	1	28	1	29	8	40	48	107
비율(%)		10.3	16.8	27.1	0.9	0.0	0.9	26.2	0.9	27.1	7.5	37.4	44.9	100.0

IV. 문제부 산하 방송 3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1. 방송사별 비교

□ 인력 기초현황

○ 방송사별 주요 현황

-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국악방송 35.9세, KTV 30.7세, 아리랑TV 33.9세였음. 각 방송사 모두 남성보다 여성이 최소 1.3배 이상 많은 구조를 보임.
- 방송사별 규모 상위 3개 직종은 KTV는 작가(21.2%) > 편집(19.7%) > 기타(16.7%), 아리랑TV는 연출(41.4%) > 작가(34.2%) > 기타(17.2%), 국악방송은 작가(40.0%) > 연출(20.0%) = 조연출(20.0%) 순이었음.
- 현재 방송국에서 일한 평균 경력은 국악방송 85.5개월, 아리랑TV 65.8개월, KTV 38.8개월 순이었음. 현재 참여 프로그램 경력은 아리랑TV 46.8개월, KTV 28.3개월, 국악방송 25.2개월 순이었음.
- 1주일 평균 작업시간은 KTV 36.2시간, 국악방송 31.4시간, 아리랑TV 30.3시간 순이었음. 월평균 임금은 KTV와 아리랑TV가 225.7만원이었고, 국악방송은 195.3만원으로 세 방송사 평균보다 약 26만원 적었음.

〈표 4-1〉 문제부 방송3사 프리랜서 방송사별 인력 기초 현황(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평균 연령	30.7		33.9		35.9		32.3		
성별 ⁵⁾	남	28	43.1	7	24.1	1	6.7	36	33.0
	여	37	56.9	22	75.9	14	93.3	73	67.0
직종	연출	10	15.2	12	41.4	3	20.0	25	22.7
	조연출	6	9.1	1	3.4	3	20.0	10	9.1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작가	14	21.2	10	34.5	6	40.0	30	27.3
	편집	13	19.7	1	3.4	1	6.7	15	13.6
	촬영	7	10.6	0	0.0	0	0.0	7	6.4
	기술	5	7.6	0	0.0	1	6.7	6	5.5
	기타	11	16.7	5	17.2	1	6.7	17	15.5
경력 (개월)	현재 방송국	38.8		65.8		85.5		52.3	
	현재 프로그램	28.3		46.8		25.2		32.7	
주 평균 작업시간		36.2		30.3		31.4		34.0	
월평균임금(만원)		225.7		225.7		195.3		221.6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 참여 프로그램

- 방송사별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프로그램 종류로는 KTV의 보도(77.3%), 아리랑TV의 예능(31.0%), 국악방송의 라디오(53.3%)가 있었음.
- 제작형태의 경우 KTV와 국악방송은 '생방송과 녹화방송 모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0%, 39.1%로 가장 높았으나, 아리랑TV의 경우 '생방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음.
- 제작주기는 세 방송사 모두 '주 5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KTV는 '주 2~3회'(18.2%),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주1회'였으며 각 비율은 37.9%, 20.0%였음.

5) 성별 중 '그 외'로 응답한 1명은 결측처리하였음.

〈표 4-2〉 방송사별 프리랜서 참여 프로그램 현황(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종류	보도	51	77.3	7	24.1	0	0.0	58	52.7
	예능	0	0.0	9	31.0	0	0.0	9	8.2
	시사교양	13	19.7	5	17.2	3	20.0	21	19.1
	라디오	0	0.0	5	17.2	8	53.3	13	11.8
	연예	0	0.0	1	3.4	0	0.0	1	0.9
	문화예술	2	3.0	2	6.9	4	26.7	8	7.3
제작 형태	생방송	20	30.3	15	51.7	2	33.6	37	33.6
	녹화방송	15	22.7	8	27.6	7	27.3	30	27.3
	생방송, 녹화방송 모두	31	47.0	6	20.7	6	39.1	43	39.1
제작 주기	주 5회 이상	40	60.6	12	41.4	9	53.3	60	54.5
	주 2~3회	12	18.2	3	10.3	1	6.7	16	14.5
	주 1회	4	6.1	11	37.9	3	20.0	18	16.4
	2주에 1회	1	1.5	3	10.3	1	6.7	5	4.5
	한 달에 1회	1	1.5	0	0.0	0	0.0	1	0.9
	불규칙	8	12.1	0	0.0	2	13.3	10	9.1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 근로계약

-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조사대상자가 방송사와 100% 서면계약 하였으나, KTV의 경우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였음. 한편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는 아리랑TV가 100%, 국악방송은 93.3%, KTV는 83.3%였음.

- KTV와 아리랑TV는 방송사 표준계약서 다음으로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나, 국악방송의 경우 방송사 표준계약서와 문체부 표준계약서만을 사용하고 있었음.

〈표 4-3〉 방송사별 프리랜서 근로계약 현황(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서면 계약 여부	방송사	64	97.0	29	100.0	15	100.0	108	98.2
	중간업체	0	0.0	0	0.0	0	0.0	0	0.0
	방송사· 중간업체 모두	0	0.0	0	0.0	0	0.0	0	0.0
	안함	2	3.0	0	0.0	0	0.0	2	1.8
계약서 형태	문체부 표준계약서	17	26.6	6	20.7	7	46.7	30	27.8
	방송사 표준계약서	26	40.6	18	62.1	8	53.3	52	48.1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	18	28.1	4	13.8	0	0.0	22	20.4
	기타	3	4.7	1	3.4	0	0.0	4	3.7
계약 기간	계약서 상 기간 정해져 있음	55	83.3	29	100.0	14	93.3	98	89.1
	계약서 상 기간 정하지 않음	7	10.6	0	0.0	1	6.7	8	7.3
	구두로 계약기간 정함	1	1.5	0	0.0	0	0.0	1	0.9
	계약서 및 구두 모두 정하지 않았음	3	4.5	0	0.0	0	0.0	3	2.7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 수당·성과급·병가

- 연장·야간 수당의 경우 아리랑TV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96.6%로 가장 높음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0.0%로 가장 낮았음. 연장·야간 수당의 ‘일부를 교통비나 식비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국악방송(20.0%), KTV(9.1%), 아리랑TV(3.4%) 순으로 나타남.
- 성과급·인센티브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악방송 0건, KTV와 아리랑TV는 각 1건만 존재하였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KTV(97.0%), 국악방송(93.3%), 아리랑TV(82.8%) 순으로 나타났음.
- 세 방송사의 조사대상자 모두 아플 때는 비공식적인 무급의 병가·휴가 형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비공식적인 유급 병가·휴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경우 공식적인 무급 병가·휴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식 유급 병가·휴가가 있다고 응답한 건수는 KTV, 아리랑TV가 각 1건(KTV 1.5%, 아리랑TV 3.4%), 국악방송이 2건(13.3%)으로 나타남.

〈표 4-4〉 방송사별 프리랜서 수당·성과급·병가 현황(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연장·야간수당	없음	49	74.2	28	96.6	10	66.7	87	79.1
	수당으로 지급	11	16.7	0.	0.0	2	13.3	13	11.8
	일부 교통비·식비 등으로 지급	6	9.1	1	3.4	3	20.0	10	9.1
성과급·인센티브	없음	64	97.0	24	82.8	14	93.3	102	92.7
	있으나 유명무실	1	1.5	4	13.8	1	6.7	6	5.5
	있음	1	1.5	1	3.4	0	0.0	2	1.8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유·무급 병가 (휴가)	공식 유급 병가·휴가 존재	1	1.5	1	3.4	2	13.3	4	3.6
	공식 무급 병가·휴가 존재	6	9.1	0	0.0	0	0.0	6	5.5
	비공식 유급 병가·휴가 존재	13	19.7	5	17.2	5	33.3	23	20.9
	비공식 무급 병가·휴가 존재	46	69.7	23	79.3	8	53.3	77	70.0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 사용종속성

○ 종속성 지표 관계

- 채용면접 시 방송국 직원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KTV(89.4%), 국악방송(73.7%), 아리랑TV(69.0%) 순이었음. 적용되는 방송사 규칙이 미존재한다는 응답은 아리랑 TV(86.2%), 국악방송(60.6%), KTV(54.5%) 순으로 나타남.
- 방송사 장비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KTV(81.8%), 아리랑TV(62.1%), 국악방송(40.0%)의 순으로 나타났음. 방송사의 사내전산망을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은 KTV(74.2%), 아리랑TV(65.5), 국악방송(53.3%) 순이었음.

〈표 4-5〉 방송사별 프리랜서 종속성 관계 (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채용면접시 방송국 직원 참여	참여	59	89.4	20	69.0	11	73.3	90	81.8
	미참여	4	6.1	6	20.7	0	0.0	10	9.1
	잘 모르겠음	3	4.5	3	10.3	4	26.7	10	9.1
방송사 장비 사용	사용	54	81.8	18	62.1	6	40.0	78	70.9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미사용	12	18.2	11	37.9	9	60.0	32	29.1
방송사 사내전산망 사용	사용	49	74.2	19	65.5	8	53.3	76	69.1
	미사용	17	25.8	10	34.5	7	46.7	34	30.9
적용받는 방송사 규칙	존재	30	45.5	4	13.8	6	40.0	40	36.4
	미존재	36	54.5	25	86.2	9	60.0	70	63.6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와의 관계

-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의 업무지시가 거의 없다는 응답은 세 방송사 모두 6%대로 비슷하였으며, 업무지시가 수시로 있다는 응답비율은 KTV와 아리랑TV가 각각 54.5%와 51.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국악방송이 20.0%로 가장 적었음.
- 제작관련자에게 본인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한다’는 응답비율은 KTV(69.7%), 아리랑TV(55.2%), 국악방송(53.3%) 순으로 나타났음. ‘보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없었고, KTV는 9%로 나타났음.

〈표 4-6〉 방송사별 프리랜서-제작관련자와의 관계 현황(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제작 관련자의 업무지시	수시로 있음	36	54.5	15	51.7	3	20.0	54	49.1
	상황에 따라 종종 있음	26	39.4	12	41.4	11	73.3	49	44.5
	거의 없음	4	6.1	2	6.9	1	6.7	7	6.4
제작 관련자	수시로 보고함	46	69.7	16	55.2	8	53.3	70	63.6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에게 보고	별도과정 없이 회의로 보고	2	3.0	5	17.2	2	13.3	9	8.2
	수행업무제출 하나 보고라고 생각안함	12	18.2	8	27.6	5	33.3	25	22.7
	보고하지 않음	6	9.1	0	0.0	0	0.0	6	5.5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

- 각 방송사에서 조사대상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데에 소속 용역 업체 직원의 영향력은 아예 없거나 미미했고, 각 방송사 노동조건, 채용공고, 업무결과 및 업무과정 수정지시, 근무장소, 휴가,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등에 관해서는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 국악방송은 출·퇴근 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무시간 결정과 관련하여, 방송사 소속 직원이나 소속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기타 인물이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이 53.3%로 많았음.
- 아리랑TV는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주체로 방송사 소속 직원과 기타인물이 동률(44.8%)을 보였으며,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사람의 비율은 기타(48.3%)가 방송사 소속 직원(44.8%) 비슷했음.

〈표 4-7〉 방송사별 프리랜서 노동조건·환경 의사결정의 주체(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채용공고	방송사 소속직원	64	97.0	25	86.2	13	86.7	102	92.7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1	6.7	1	0.9
	기타	2	3.0	4	13.8	1	6.7	7	6.4
노동조건	방송사 소속직원	65	98.5	26	89.7	14	93.3	105	95.5
	소속 용역업체 직원	1	1.5	0	0.0	0	0.0	1	0.9
	기타	0	0.0	3	10.3	1	6.7	4	3.6
업무결과 수정지시	방송사 소속직원	64	97.0	24	82.8	14	93.3	102	92.7
	소속 용역업체 직원	1	1.5	0	0.0	0	0.0	1	0.9
	기타	1	1.5	5	17.2	1	6.7	7	6.4
업무과정 수정지시	방송사 소속직원	61	92.4	24	82.8	13	86.7	98	89.1
	소속 용역업체 직원	1	1.5	1	3.4	0	0.0	2	1.8
	기타	4	6.1	4	13.8	2	13.3	10	9.1
출·퇴근 시간	방송사 소속직원	42	63.6	13	44.8	7	46.7	62	56.4
	소속 용역업체 직원	3	4.5	3	10.3	0	0.0	6	5.5
	기타	21	31.8	13	44.8	8	53.3	42	38.2
연장·휴일· 야간근로 등 근무시간	방송사 소속직원	47	71.2	13	44.8	7	46.7	67	60.9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2	6.9	0	0.0	2	1.8
	기타	19	28.8	14	48.3	8	53.3	41	37.3
근무장소	방송사 소속직원	61	92.4	19	65.5	8	53.3	88	80.0
	소속 용역업체 직원	1	1.5	1	3.4	0	0.0	2	1.8
	기타	4	6.1	9	31.0	7	46.7	20	18.2
휴가(병가· 조퇴) 허가	방송사 소속직원	55	83.3	23	79.3	11	73.3	89	80.9
	소속 용역업체 직원	1	1.5	1	3.4	0	0.0	2	1.8
	기타	10	15.2	5	17.2	4	26.7	19	17.3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방송사 소속직원	61	92.4	21	72.4	12	80.0	94	85.5
	소속 용역업체 직원	2	3.0	1	3.4	0	0.0	3	2.7
	기타	3	4.5	7	24.1	3	20.0	13	11.8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의 형태

- 조사대상자들은 '과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이익의 형태'로는 구두경고가 38.2%였고, 기타 33.6%, 보수 감액 11.8%, 제작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 10.9% 등의 순이었음.
- KTV와 아리랑TV는 '구두경고'의 방법을 각각 39.4%, 41.4%로 가장 많았고, 국악방송은 '기타'의 방법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는 아리랑 TV가 27.6%로 가장 많았음.

〈표 4-8〉 방송사별 프리랜서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형태(단위: 명, %)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형태	구두경고	26	39.4	12	41.4	4	26.7	42	38.2
	경위서 제출	5	7.6	0	0.0	1	6.7	6	5.5
	보수 감액	13	19.7	0	0.0	0	0.0	13	11.8
	제작,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	2	3.0	8	27.6	2	13.3	12	10.9
	기타	20	30.3	9	31.0	8	53.3	37	33.6
합계		66	100.0	29	100.0	15	100.0	110	100.0

2. 직종별 비교

□ 인력 기초현황

○ 직종별 주요 현황

- 조사대상자의 직종별 평균 연령은 작가(35.5세), 연출(34.8세), 촬영(32.7세), 기타(32.2세), 편집(27.9세), 기술(26.3세), 조연출(25.8세) 순으로 나타났음.⁶⁾
- 현재 방송국에서의 경력이 긴 상위 3개 직종은 작가(68.7개월) > 연출(68.4개월) > 촬영(53.1개월)이었고, 현재 참여 프로그램에서의 경력이 긴 상위 3개 직종은 촬영(53.1개월) > 연출(47.2개월) > 편집(36.9개월)이었음.
- 1주일 평균 작업시간은 촬영(41.7시간) > 편집(41.0시간) > 조연출(40.0시간) > 작가(34.6시간) 순으로 평균(34.0시간)보다 많았음. 월평균 임금은 연출직(252.7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직의 월평균 임금은 189.1만원으로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음.

〈표 4-9〉 문체부 방송3사 프리랜서 직종별 인력 기초 현황(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평균 연령		34.8		25.8		35.5		27.9	
성별 ⁷⁾	남	11	44.0	3	30.0	4	13.8	6	40.0
	여	14	56.0	7	70.0	25	86.2	9	60.0
방송사	KTV	10	40.0	6	60.0	14	46.7	13	86.7
	아리랑 TV	12	48.0	1	10.0	10	33.3	1	6.7
	국악방송	3	12.0	3	30.0	6	20.0	1	6.7
경력 (개월)	현재 방송국	68.4		29.8		68.7		36.9	
	현재 프로그램	47.2		20.3		23.2		36.9	
주평균작업시간		33.6		40.0		34.6		41.0	
월평균임금 (만원)		252.7		203.0		227.7		216.0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6) 거의 모든 직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작가(86.2%)였음. 그러나 촬영직은 전원(100.0%)이 남성으로 구성되어있었음.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평균 연령		32.7		26.3		32.2		32.2	
성별	남	7	100.0	2	33.3	3	17.6	36	33.0
	여	0	0.0	4	66.7	14	82.4	73	67.0
방송사	KTV	7	100.0	5	83.3	11	64.7	66	60.0
	아리랑 TV	0	0.0	0	0.0	5	29.4	29	26.4
	국악방송	0	0.0	1	16.7	1	5.9	15	13.6
경력 (개월)	현재 방송국	53.1		15.8		39.1		52.3	
	현재 프로그램	53.1		15.8		29.4		32.7	
주평균작업시간		41.7		25.5		24.2		34.0	
월 평균 임금 (만원)		218.3		201.5		189.1		221.6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 참여 프로그램

- 모든 직종에서 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출직과 작가는 다른 직종에 비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종류가 더 다양했음
- 직종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제작형태로는 연출(48%)/작가(50%)/기타(47.1%)가 '생방송', 조연출(60%)이 '녹화방송', 편집(80.0%)/촬영(71.4%)/기술(66.7%)이 '생방송과 녹화방송 모두'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 5회 이상 제작 참여 응답 상위 3개 직종은 편집(80.0%) > 작가(60.0%) > 촬영(57.1%)이었음.

〈표 4-10〉 직종별 프리랜서 참여 프로그램 현황(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종류	보도	8	32.0	4	40.0	13	43.3	11	73.3
	예능	6	24.0	0	0.0	3	10.0	0	0.0

7) 성별 중 '그 외'로 응답한 1명은 결측처리하였음.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시사교양	6	24.0	3	30.0	3	10.0	3	20.0
	라디오	4	16.0	0	0.0	7	23.3	0	0.0
	연예	0	0.0	0	0.0	0	0.0	1	6.7
	문화예술	1	4.0	3	30.0	4	13.3	0	0.0
제작 형태	생방송	12	48.0	1	10.0	15	50.0	1	6.7
	녹화방송	7	28.0	6	60.0	7	23.3	2	13.3
	생방송, 녹화방송 모두	6	24.0	3	30.0	8	26.7	12	80.0
제작 주기	주 5회 이상	11	44.0	4	40.0	18	60.0	12	80.0
	주 2~3회	4	16.0	2	20.0	2	6.7	2	13.3
	주 1회	9	36.0	2	20.0	6	20.0	0	0.0
	2주에 1회	0	0.0	0	0.0	4	13.3	0	0.0
	한 달에 1회	1	4.0	0	0.0	0	0.0	0	0.0
	불규칙	0	0.0	2	20.0	0	0.0	1	6.7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종류	보도	7	100.0	5	83.3	10	58.8	58	52.7
	예능	0	0.0	0	0.0	0	0.0	9	8.2
	시사교양	0	0.0	0	0.0	6	35.3	21	19.1
	라디오	0	0.0	1	16.7	1	5.9	13	11.8
	연예	0	0.0	0	0.0	0	0.0	1	0.9
	문화예술	0	0.0	0	0.0	0	0.0	8	7.3
제작	생방송	0	0.0	0	0.0	8	47.1	37	33.6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형태	녹화방송	2	28.6	2	33.3	4	23.5	30	27.3
	생방송, 녹화방송 모두	5	71.4	4	66.7	5	29.4	43	39.1
제작 주기	주 5회 이상	4	57.1	3	50.0	8	47.1	60	54.5
	주 2~3회	1	14.3	1	16.7	4	23.5	16	14.5
	주 1회	0	0.0	0	0.0	1	5.9	18	16.4
	2주에 1회	0	0.0	0	0.0	1	5.9	5	4.5
	한 달에 1회	0	0.0	0	0.0	0	0.0	1	0.9
	불규칙	2	28.6	2	33.3	3	17.6	10	9.1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 근로계약

- 연출(96.0%)과 기타(94.1%)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전원 방송사와 서면계약을 작성했으며, 연출직과 기타직의 각 1명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방송사 표준계약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 편집의 경우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53.3%).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종은 작가(43.3%)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직종이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연출/조연출/작가/편집의 경우 계약서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소수 있었음. '구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연출직 1명, 계약서 및 구두 모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촬영직 1명과 기타직 2명이 있었음.

〈표 4-11〉 직종별 프리랜서 근로계약 현황(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서면 계약 여부	방송사	24	96.0	10	100.0	30	100.0	15	100.0
	중간업체	0	0.0	0	0.0	0	0.0	0	0.0
	방송사· 중간업체 모두	0	0.0	0	0.0	0	0.0	0	0.0
	안함	1	4.0	0	0.0	0	0.0	0	0.0
계약서 형태	문체부 표준계약서	5	20.8	4	40.0	13	43.3	3	20.0
	방송사 표준계약서	13	54.2	5	50.0	14	46.7	3	20.0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	6	25.0	1	10.0	2	6.7	8	53.3
	기타	0	0.0	0	0.0	1	3.3	1	6.7
계약 기간	계약서 상 기간 정해져 있음	21	84.0	9	90.0	28	93.3	13	86.7
	계약서 상 기간 정하지 않음	3	12.0	1	10.0	2	6.7	2	13.3
	구두로 계약기간 정함	1	4.0	0	0.0	0	0.0	0	0.0
	계약서 및 구두 모두 정하지 않았음	0	0.0	0	0.0	0	0.0	0	0.0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서면 계약 여부	방송사	7	100.0	6	100.0	16	94.1	108	98.2
	중간업체	0	0.0	0	0.0	0	0.0	0	0.0
	방송사· 중간업체 모두	0	0.0	0	0.0	0	0.0	0	0.0
	안함	0	0.0	0	0.0	1	5.9	2	1.8
계약서 형태	문체부 표준계약서	1	14.3	1	16.7	3	18.8	30	27.8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방송사 표준계약서	5	71.4	4	66.7	8	50.0	52	48.1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	0	0.0	1	16.7	4	25.0	22	20.4
	기타	1	14.7	0	0.0	1	6.3	4	3.7
계약 기간	계약서 상 기간 정해져 있음	6	85.7	6	100.0	15	88.2	98	89.1
	계약서 상 기간 정하지 않음	0	0.0	0	0.0	0	0.0	8	7.3
	구두로 계약기간 정함	0	0.0	0	0.0	0	0.0	1	0.9
	계약서 및 구두 모두 정하지 않았음	1	14.3	0	0.0	2	11.8	3	2.7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 수당·성과급·병가

- 연장·야간 수당은 모든 직종에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다른 직종의 경우 연장 및 야간수당을 수당 형태로 지급받거나 일부 교통비·식사비로 지급받는 경우가 소수 있었으나, 연출직과 기술직은 연장·야간의 일부를 식비·교통비로 지급받는 경우가 0.0%였으며, 촬영직은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없었음.
- 성과급·인센티브는 연출, 조연출, 편집, 촬영, 기술직 전원(100%)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작가, 기타직의 경우도 성과급·인센티브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각 1명에 그쳤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이상이었음.
- 모든 직종은 아플 때 비공식적인 무급 병가·휴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 공식적인 무급 병가·휴가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조연출과 기타직을 제외한 직종에 소수 존재하였으며, 공식적인 유급 병가·휴가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연출, 기술, 기타직에 소수 존재하였음.

〈표 4-12〉 직종별 프리랜서 수당·성과급·병가 현황(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연장· 야간수당	없음	23	92.0	8	80.0	22	73.3	10	66.7
	수당으로 지급	2	8.0	1	10.0	5	16.7	1	6.7
	일부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	0	0.0	1	10.0	3	10.0	4	26.7
성과급· 인센티브	없음	25	100.0	10	100.0	25	83.3	15	100.0
	있으나 유명무실	0	0.0	0	0.0	4	13.3	0	0.0
	있음	0	0.0	0	0.0	1	3.3	0	0.0
유·무급 병가 (휴가)	공식 유급 병가·휴가 존재	2	8.0	0	0.0	0	0.0	0	0.0
	공식 무급 병가·휴가 존재	1	4.0	0	0.0	2	6.7	1	6.7
	비공식 유급 병가·휴가 존재	6	24.0	4	40.0	3	10.0	4	26.7
	비공식 무급 병가·휴가 존재	16	64.0	6	60.0	25	83.3	10	66.7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연장· 야간수당	없음	7	100.0	4	66.7	13	76.5	87	73.1
	수당으로 지급	0	0.0	2	33.3	2	11.8	13	11.8
	일부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	0	0.0	0	0.0	2	11.8	10	9.1
성과급· 인센티브	없음	7	100.0	6	100.0	14	82.4	102	92.7
	있으나 유명무실	0	0.0	0	0.0	2	11.8	6	5.5
	있음	0	0.0	0	0.0	1	5.9	2	1.8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유·무급 병가 (휴가)	공식 유급 병가·휴가 존재	0	0.0	1	16.7	1	5.9	4	3.6
	공식 무급 병가·휴가 존재	1	14.3	1	16.7	0	0.0	6	5.5
	비공식 유급 병가·휴가 존재	2	28.6	1	16.7	3	17.6	23	20.9
	비공식 무급 병가·휴가 존재	4	57.1	3	50.0	13	76.5	77	70.0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 사용종속성

○ 방송사 종속성 관계

- 채용 면접 시 방송사 직원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직종은 편집과 기술직이 100.0%로 가장 높았고, 작가가 63.3%로 가장 낮았음. 그 외 직종은 80% 이상이 채용 면접 시 방송사 소속 직원이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음.
- 촬영 및 기술직 전원(100.0%)은 방송사 장비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작가는 방송사 장비를 사용하는 비율이 36.7%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낮았음. 방송사의 사내전산망은 조연출 및 기술직의 전원(100.0%)이 사용하는데 비해 기타직의 경우 47.1%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적용받는 방송사 규칙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직종이 미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촬영직의 71.4%, 기술직의 66.7%는 적용받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답하였음.

〈표 4-13〉 직종별 프리랜서 종속성 관계 (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채용면접시 방송국 직원	참여	22	88.0	8	80.0	19	63.3	15	100.0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참여	미참여	0	0.0	0	0.0	9	30.0	0	0.0
	잘 모르겠음	3	12.0	2	20.0	2	6.7	0	0.0
방송사 장비 사용	사용	20	80.0	8	80.0	11	36.7	13	86.7
	미사용	5	20.0	2	20.0	19	63.3	2	13.3
방송사 사내전산망 사용	사용	18	72.0	10	100.0	16	53.3	14	93.3
	미사용	7	28.0	0	0.0	14	46.7	1	6.7
적용받는 방송사 규칙	존재	7	28.0	3	30.0	10	33.3	4	26.7
	미존재	18	72.0	7	70.0	20	66.7	11	73.3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채용면접시 방송국 직원 참여	참여	6	85.7	6	100.0	14	82.4	90	81.8
	미참여	1	14.3	0	0.0	0	0.0	10	9.1
	잘 모르겠음	0	0.0	0	0.0	3	17.6	10	9.1
방송사 장비 사용	사용	7	100.0	6	100.0	13	76.5	78	70.9
	미사용	0	0.0	0	0.0	4	23.5	32	29.1
방송사 사내 전산망 사용	사용	4	57.1	6	100.0	8	47.1	76	69.1
	미사용	3	42.9	0	0.0	9	52.9	34	30.9
적용받는 방송사 규칙	존재	5	71.4	4	66.7	7	41.2	40	36.4
	미존재	2	28.6	2	33.3	10	58.8	70	63.6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 프로그램 제작관련자와의 관계

- 프로그램 제작관련자의 업무지시가 제작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위 3개 직종은 촬영(71.4%) > 조연출(60.0%) > 작가(53.3%) 순으로 나타남.
- 제작관련자에게 본인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하는 상위 3개 직종은 조연출(80.0%) > 기타(76.5%) > 연출(68.0%)로 나타남. 반대로 본인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거의 보고하지 않는 상위 3개 직종은 촬영(28.6%) > 기술(16.7%) > 기타(11.8%) 순으로 나타남.

〈표 4-14〉 직종별 프리랜서-제작관련자와의 관계 현황(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제작 관련 자의 업무 지시	수시로 있음	12	48.0	6	60.0	16	53.3	7	46.7
	상황에 따라 종종 있음	11	44.0	3	30.0	13	43.3	8	53.3
	거의 없음	2	8.0	1	10.0	1	3.3	0	0.0
제작 관련자에게 보고	수시로 보고함	17	68.0	8	80.0	20	66.7	7	46.7
	별도과정 없이 회의로 보고	3	12.0	1	10.0	2	6.7	1	6.7
	수행업무제출하나 보고라고 생각안함	5	20.0	1	10.0	7	23.3	7	46.7
	보고하지 않음	0	0.0	0	0.0	1	3.3	0	0.0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제작 관련자의 업무 지시	수시로 있음	5	71.4	1	16.7	7	41.2	54	49.1
	상황에 따라 종종 있음	1	14.3	5	83.3	8	47.1	49	44.5
	거의 없음	1	14.3	0	0.0	2	11.8	7	6.4
제작 관련자에게 보고	수시로 보고함	4	57.1	1	16.7	13	76.5	70	63.6
	별도과정 없이 회의로 보고	0	0.0	1	16.7	1	5.9	9	8.2
	수행업무제출하나 보고라고 생각안함	1	14.3	3	50.0	1	5.9	25	22.7
	보고하지 않음	2	28.6	1	16.7	2	11.8	6	5.5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관련 의사결정의 주체

- 조사대상 직종의 채용공고, 노동조건, 업무결과 및 과정, 근무장소, 휴가(병가),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의 결정 및 시행주체는 방송사 소속 직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다만 출·퇴근 시간 결정하는 사람으로는 연출직의 경우 방송사 소속 직원과 기타 인물이 동률(48.0%)을 보였으며, 작가(50%)와 편집(60.0%)의 경우 기타인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사람 역시 편집(66.7%가 기타인물)을 제외한 직종 모두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4-15〉 직종별 프리랜서 노동조건·환경 의사결정의 주체(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채용공고	방송사 소속직원	24	96.0	10	100.0	25	83.3	15	100.0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1	3.3	0	0.0
	기타	1	4.0	0	0.0	4	13.3	0	0.0
노동조건	방송사 소속직원	25	100.0	9	90.0	26	86.7	15	100.0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1	3.3	0	0.0
	기타	0	0.0	1	10.0	3	10.0	0	0.0
업무결과 수정지시	방송사 소속직원	24	96.0	10	100.0	25	83.3	75	100.0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0	0.0	0	0.0
	기타	1	4.0	0	0.0	5	16.7	0	0.0
업무과정 수정지시	방송사 소속직원	24	96.0	9	90.0	25	83.3	15	100.0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1	3.3	0	0.0
	기타	1	4.0	1	10.0	4	13.3	0	0.0
출·퇴근 시간	방송사 소속직원	12	48.0	6	60.0	13	43.3	6	40.0
	소속 용역업체 직원	1	4.0	1	10.0	2	6.7	0	0.0
	기타	12	48.0	3	30.0	15	50.0	9	60.0
연장·휴일· 야간근로 등 근무시간	방송사 소속직원	13	52.0	7	70.0	16	53.3	5	33.0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1	10.0	1	3.3	0	0.0
	기타	12	48.0	2	20.0	13	43.3	10	66.7
근무장소	방송사 소속직원	16	64.0	8	80.0	20	66.7	14	93.3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2	6.7	0	0.0
	기타	9	36.0	2	20.0	8	26.7	1	6.7
휴가 (병가·조퇴) 허가	방송사 소속직원	24	96.0	6	60.0	22	73.3	10	66.7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1	10.0	0	0.0	0	0.0
	기타	1	4.0	3	30.0	8	26.7	5	33.3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방송사 소속직원	22	88.0	9	90.0	22	73.3	13	86.7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2	6.7	0	0.0
	기타	3	12.0	1	10.0	6	20.0	2	13.3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채용공고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6	100.0	15	88.2	102	92.7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0	0.0	1	0.9
	기타	0	0.0	0	0.0	2	11.8	7	6.4
노동조건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6	100.0	17	100.0	105	95.5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0	0.0	1	0.9
	기타	0	0.0	0	0.0	0	0.0	4	3.6
업무결과 수정지시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5	83.3	16	94.1	102	92.7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1	16.7	0	0.0	1	0.9
	기타	0	0.0	0	0.0	1	5.9	7	6.4
업무과정 수정지시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5	83.3	13	76.5	98	89.1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1	16.7	0	0.0	2	1.8
	기타	0	0.0	0	0.0	4	23.5	10	9.1
출·퇴근 시간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5	83.3	13	76.5	62	56.4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1	16.7	1	5.9	6	5.5
	기타	0	0.0	0	0.0	3	17.6	42	38.2
연장·휴일· 야간근로 등 근무시간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6	100.0	13	76.5	67	60.9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0	0.0	2	1.8
	기타	0	0.0	0	0.0	4	23.5	41	37.3
근무장소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6	100.0	17	100.0	88	80.0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0	0.0	0	0.0	2	1.8
	기타	0	0.0	0	0.0	0	0.0	20	18.2
휴가 (병가·조퇴) 허가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5	83.3	15	88.2	89	80.9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1	16.7	0	0.0	2	1.8
	기타	0	0.0	0	0.0	2	11.8	19	17.3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방송사 소속직원	7	100.0	5	83.3	16	94.1	94	85.5
	소속 용역업체 직원	0	0.0	1	16.7	0	0.0	3	2.7
	기타	0	0.0	0	0.0	1	5.9	13	11.8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의 형태

- 조사대상자의 ‘과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이익’ 형태로는 촬영(57.1%), 작가(43.3%), 조연출/편집(40.0%) 직종은 ‘구두경고’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기술(66.7%), 기타(41.2%), 연출(36.0%) 직종은 ‘기타’ 형태가 가장 많았음.

〈표 4-16〉 직종별 프리랜서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형태(단위: 명, %)

		연출		조연출		작가		편집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형태	구두경고	8	32.0	4	40.0	13	43.3	6	40.0
	경위서 제출	3	12.0	1	10.0	0	0.0	1	6.7
	보수 감액	2	8.0	1	10.0	4	13.3	3	20.0
	제작,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	3	12.0	1	10.0	5	16.7	0	0.0
	기타	9	36.0	3	30.0	8	26.7	5	33.3
합계		25	100.0	10	100.0	30	100.0	15	100.0

		촬영		기술		기타		전체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형태	구두경고	4	57.1	1	16.7	6	35.3	42	38.2
	경위서 제출	0	0.0	0	0.0	1	5.9	6	5.5
	보수 감액	1	14.3	1	16.7	1	5.9	13	11.8
	제작,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	1	14.3	0	0.0	2	11.8	12	10.9
	기타	1	14.3	4	66.7	7	41.2	37	33.6
합계		7	100.0	6	100.0	17	100.0	110	100.0

3. 소결

- 첫째, 2023년 문제부 산하 방송 3사 프리랜서 평균 연령은 32.2세로, 촬영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음. 현재 각 방송사에서는 약 4.4년, 현 프로그램에서는 약 2.7년의 경력을 가짐. 1주 평균 작업시간은 34시간(52시간 이상 5.6%)이었으며, 월 평균 보수는 221.6만원이었음.
- 둘째, 프리랜서들은 ‘생방송과 녹화방송 제작 모두’와 ‘주 5회 이상’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많았음. 대부분 방송사와 서면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서는 각 방송사의 표준계약서(48.1%), 문제부 표준계약서(27.1%),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20.4%) 순이었음.
- 셋째, 프리랜서들은 연장·야간수당, 성과급·인센티브, 공식 유·무급 병가(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연장·야간수당의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거나 일부가 식비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각 10% 내외 정도로 존재했음. 유·무급 병가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응답은 10% 이내였으며, 대부분은 아플 때 비공식 무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었음.
- 넷째, 프리랜서들은 업무에 방송사의 장비나 사내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었고, 프리랜서 채용, 계약, 업무지휘감독, 복무규율, 여타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등은 대부분 방송사 혹은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시행하고 있었음. 결국 실질적으로는 ‘고용-피고용관계’가 다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V. 맺음말 - 프리랜서 개선과제

□ 조사 결과 요약 및 함의

○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고용구조 특징

- 문체부 방송 3사의 인력구조 변화 특징은 정규직 감소(2022년 51.9% → 2023년 29.8%+8.8%)와 프리랜서 증가(2022년 45.1% → 2023년 52.3%)로 확인됨. 문체부 방송 3사 인력 변화 특징은 도급용역 형태의 위탁 고용이 9.1%(56명 : 아리랑 TV 27명, 국악방송 29명)로 새롭게 증가했음.
- 문체부 산하 방송 3사의 프리랜서 비중은 정규직을 제외한 고용형태 중 75.8%로 주요 방송사 13곳 평균(32.1%)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KTV는 정규직 제외 프리랜서가 100%이고, 아리랑TV(66.5%)와 국악방송(61.5%)은 10명 중 6명이 프리랜서였음(<표 5-1>).

<표 5-1> 13개 주요 공중파 및 방송사 불안정 고용 인력 구성 현황(단위: 명, %)

	13개 방송사 (21년)		문체부 산하 3곳 방송사 (23년)							
	규모	비율%	계		KTV		아리랑TV		국악방송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전체	9,199	100.0	459	100.0	139	100.0	242	100.0	78	100.0
무기계약직	290	3.2								
계약직	1,154	12.5	1	0.0					1	1.2
프리랜서	2,953	32.1	348	75.8	139	100.0	161	66.5	48	61.5
외주업체	213	2.3								
용역업체	1,406	15.3	56	12.2			27	11.1	29	37.2
자회사	1,333	14.5	54	11.7			54	22.3		
파견직	1,769	19.2								
기타	81	0.9								

*자료 : 주요 13개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이찬구 외, 2022), 문체부 3사 조사(김종진, 2023) 각기 원자료 재구성.

○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고용 증감 현황

- 첫째, 프리랜서 고용 증가는 KTV(2022년 48.9% → 2023년 84.2%) 2배 증가했고, 아리랑TV는 비슷한 비중(2022년 41.7% → 2023년 41.9%)이고, 국악방송은 감소(2022년 45.5% → 2023년 32.3%)가 확인됨.
- 둘째, 문체부 방송 3사의 작년(22년)과 올해(23년) 인력구조 변화 중 직종별 현황은 연출(41명), 작가(65명), 편집(5명), 기술(3명)이 감소했고, 조연출(18명), 촬영(20명), 기타(16명) 직종은 증가했음.
- 셋째,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의 성별 인력 분리 현상이 확인되며, KTV 여성 55.8%(92명), 남성 28.5%(47명), 아리랑TV 여성 24.7%(95명), 남성 17.2%(66명), 국악방송 여성 37.4%(40명), 남성 7.5%(8명)이었음.

○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소득 현황

- 첫째,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은 221만6천원으로, 주40시간 기준 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201만원)보다 20만원 정도 많은 수준임. 평균 34시간 남짓의 작업 시간(52시간 이상 5.6%)을 고려하더라도, 별도의 연장이나 휴일 그리고 연차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저소득 구조를 해결해야 함.
- 둘째,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월평균 소득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기준 필요성(방송사 : 성별-직종 등)이 있음. 대표적으로 문체부 각 방송사에서 취재 작가의 경우 동일 형태인데 월 보수는 20만원의 차이가 있고, 서브작가도 20만원의 차이가 있음. 또한 AD도 20만원의 임금차이가 있고, 편집 업무도 30만원의 차이가 확인됨.

〈표 5-2〉 문체부 방송 3사 월평균 소득 현황- 방송사, 직종(단위: 만원)

KTV			아이랑TV			국악방송			전체 평균		
직종 직무	평균	표준 편차	직종 직무	평균	표준 편차	국악방송	평균	표준 편차	직종 직무	평균	표준 편차
PD	263.4	57.1	PD	261.8	89.0	PD	180.7	55.5	PD	252.7	76.5
아나운서	197.5	47.9	아나운서	134.0	52.7	아나운서	200.0		아나운서	166.0	56.0
리포터	120.0								리포터	120.0	
메인작가	270.0	42.4	메인작가	260.0	24.5	메인작가	257.5	75.9	메인작가	261.0	48.4
서브작가	221.4	23.4	서브작가	252.3	49.9	서브작가	228.0		서브작가	232.3	34.6
			보조작가	127.5	38.9				보조작가	127.5	38.9
취재작가	200.0	23.5				취재작가	180.0		취재작가	196.7	22.5
자료조사	180.0								자료조사	180.0	
카메라 감독	205.0	7.1							카메라 감독	205.0	7.1
촬영보조	223.6	17.5							촬영보조	223.6	17.5
그래픽	250.0	56.6							그래픽	250.0	56.6
CG	226.0	23.0							CG	226.0	23.0
편집	224.0	24.1	편집	250.0		편집	50.0		편집	202.9	70.9
음향음악	189.0								음향음악	189.0	
AD	208.3	31.9	AD	180.0		AD	200.0	0.0	AD	203.0	25.4
MD	220.0								MD	220.0	
인제스트	240.0	0.0							인제스트	240.0	0.0
아카이빙	261.7	34.0							아카이빙	261.7	34.0
						기술보조	100.0		기술보조	100.0	
기타	213.3	32.1							기타	213.3	32.1
전체	225.7	41.2	전체	225.7		전체	195.3	71.3	전체	221.6	59.8

* 주 : 설문조사 보수 기준(자기기입식)이기에 다소 차이나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표 5-3〉 문체부 방송 3사 월평균 소득 현황- 직종, 성별(단위: 만원)

여성 프리랜서			남성 프리랜서			전체 프리랜서		
직종직무	평균	표준편차	직종직무	평균	표준편차	직종직무	평균	표준편차
PD	248.4	85.3	PD	258.2	67.2	PD	252.7	76.5
아나운서	175.0	57.6	아나운서	130.0	42.4	아나운서	166.0	56.0
리포터	120.0					리포터	120.0	
메인작가	261.0	48.4				메인작가	261.0	48.4
서브작가	235.2	34.7	서브작가	200.0		서브작가	232.3	34.6

여성 프리랜서			남성 프리랜서			전체 프리랜서		
직종직무	평균	표준편차	직종직무	평균	표준편차	직종직무	평균	표준편차
보조작가	127.5	38.9				보조작가	127.5	38.9
자료조사	180.0					자료조사	180.0	
취재작가	180.0	0.0	취재작가	210.0	26.5	취재작가	196.7	22.5
그래픽	290.0		그래픽	210.0		그래픽	250.0	56.6
CG	220.0	21.6	CG	250.0		CG	226.0	23.0
편집	170.0	105.8	편집	227.5	26.3	편집	202.9	70.9
AD	205.7	30.5	AD	196.7	5.8	AD	203.0	25.4
MD	220.0		인제스트	240.0		MD	220.0	
인제스트	240.0	0.0				인제스트	240.0	0.0
아카이빙	261.7	34.0				아카이빙	261.7	34.0
기술보조	100.0					기술보조	100.0	
기타	195.0	7.1	기타	250.0		기타	213.3	32.1
			카메라 감독	205.0	7.1	카메라 감독	205.0	7.1
			촬영보조	223.6	17.5	촬영보조	223.6	17.5
			음향음악	189.0		음향음악	189.0	
전체	220.3	64.4	전체	224.9	50.6	전체	221.6	59.8

□ 방송산업 노동문제와 사회적 이슈 - 근로자성 문제

- 방송사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점은 최근 몇 년 동안 국회(작가, 스태프 근로자성 및 노동환경)나 국가인권위원회(아나운서 차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방송사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논의되거나 권고한바 있음.⁸⁾
 - 방송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제는 이미 국내 다수의 공영방송사와 지방 방송, 케이블 방송사 등에서 문제제기된 바 있고, 공영방송사에서만 최근에 약 여섯 차례의 부당해고(3회: MBC, SBS, JTBC)나 퇴직금 및 수당(2회: MBC, JTBC) 문제가 있었고, 근로감독 이후 공중파3사 프리랜서의 직접고용 전환 사례도 있었음,
 - 대표적 지표들은 △일의 선택 자율성, 출퇴근 고정성, 작업수단 제공 여부(지시 감독: 사용종속성), △보수 방식(경제적 종속성), △일반적 형태(근로계약, 사회보험, 근로소득세) 등이 활용되고 있음.

8) 또한 방송사 제작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송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등 해당 현장 및 작업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도 제기된바 있음.

◎ **조작적 정의**

: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요인에 해당하는 요인(12개 지표)에 따라, 최저 0점에서 15점 이상으로 점수 부여. 근로자성 '하'(6점 미만) → '중하'(6-9점 미만) → '중'(9-12점 미만) → '중상'(12-15점 미만) → '상'(15점 이상)으로 구분

◎ **분석의 해석**

: 본 조사에서 프리랜서 근로자성 '하'에서 '상'으로 높아질수록 방송사의 지휘·감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 해석 의미

- 이 글에서는 문체부 3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근로자성 판단 체크리스트> 12개 항목(기존 법률적 판단 기준 준용)으로 양적 방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했음. 이 지표를 이용하여 정량적 접근방법을 택했고, 이중 근로자성 판단 지표 중 중요 근로자성 판단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했음.
- 근로자성 판단기준 지표 중 '가중치 판단지표'는 1.5점, '일반 판단기준 지표'는 1점으로 지정했음. 이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지표는 <최저 0점에서 16.5점>까지 점수가 부여됨. 응답자 개인 점수에 따라 근로자성 '하'(6점 미만) → '중하'(6-9점 미만) → '중'(9-12점 미만) → '중상'(12-15점 미만) → '상'(15점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근로자성 '하'에서 '상'으로 높아 질수록 방송사의 근로자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함.

〈표 5-4〉 방송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주요 지표의 양적 분석 모형

판단내용	판단기준	설문 문항 → 선택문항	근로자성 판단 중점사항 가중치 부여문항	23년 조사 결과
채용기준과 채용주체 확인	채용주체	■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채용공고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 방송사 소속 직원		92.7%
	근로계약서 작성	■ 귀하는 체결한 '계약서'는 어떤 형태입니까? → 문체부 표준계약서 or 방송사 표준계약서		75.9%
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권	업무독립성	■ 귀하가 한일의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수정업무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 방송사 소속 직원	○	92.7%
	업무결합성	■ 일하면서 방송사 PD 등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의 업무상 지시 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수시로 있다	○	49.1%
	업무결정권	■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일하는 도중 누구에게 수정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방송사 소속 직원	○	89.1%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업무보고	■ 귀하가 수행한 일에 대해 방송사 PD 등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에게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지나요? → 수시로 보고한다	○	63.9%
	업무전산망 사용	■ 귀하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방송사 사내 전산망을 사용하나요? → 예	○	69.1%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근무시간 지정	■ 귀하의 출퇴근 시간은 누구에 의해 결정됩니까? → 방송사 소속 직원	○	56.4%
	근무장소 지정	■ 귀하의 근무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 방송사 소속 직원	○	80.0%
	휴무일 지정	■ 귀하가 휴가(병가, 조퇴 포함) 등을 사용할 때 누구의 허가(결재 등)를 받아야 하나요? → 방송사 소속 직원	○	80.9%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적용	인사규정 적용	■ 귀하가 적용을 받는 방송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 규정 등 업무 관련 수칙이 존재합니까? → 예		36.4%
	복무규율 적용	■ 귀하가 무단결근하거나 일을 잘못했을 때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 방송사 소속 직원	○	85.5%

* 주 : 방송장비 사용 업무 70.9%, 임금 등 노동조건 방송사 직원 결정 95.5%, 채용면접 방송사 소속 직원 참여 81.8%

○ 2023년 조사 분석에서 문제부 방송 3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문제를 3가지로 요약 가능함. 첫째, 프리랜서 근로자성 12개 판단지표 중 채용주체(92.7%), 업무독립성(92.7%), 업무결정권(89.1%), 복무 규율(85.5%), 휴일일 지정(80.9%), 근무장소 지정(80%) 등의 요인이 높게 나타났음(〈표 5-4〉).

- 둘째, 프리랜서 근로자성 추정 [상] 집단은 촬영과 CG(20%), 취재작가(16.7%), 메인작가(10%) 등이 확인됨. 근로자성 [상+중상] 집단 중 60% 이상 직종직무는 PD, 아나운서, 취재작가, CG, AD, 인제스트 등이 확인됨.
- 셋째, 프리랜서 근로자성 추정 [상] 집단은 KTV가 12.1%로 높았고, [중상] 집단은 KTV 65.1%, 국악방송 53.3%, 아리랑 TV 37.9% 순이었음.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별 근로자성 추정 [중상] 집단은 보도뉴스 68.9%, 시사교양 57.1%, 라디오 46.2% 등의 순이었음.

〈표 5-5〉 문체부 방송 3사 근로자성 판단 정량적 분석 결과1(단위: %)

	응답자 (명)	하 (6점 미만)	중하 (6~9점 미만)	중 (9~12점 미만)	중상 (12~15점 미만)	상 (15점 이상)	합계	
전체	110	6.4	10.9	26.4	49.1	7.3	100.0	
방송사	K TV	66	0.0	12.1	22.7	53.0	12.1	100.0
	아리랑TV	29	13.8	6.9	41.4	37.9	0.0	100.0
	국악방송	15	20.0	13.3	13.3	53.3	0.0	100.0
	PD	25	4.0	4.0	32.0	60.0	0.0	100.0
직종 직무	아나운서	10	0.0	20.0	20.0	60.0	0.0	100.0
	리포터	1	0.0	100.0	0.0	0.0	0.0	100.0
	메인작가	10	10.0	20.0	20.0	40.0	10.0	100.0
	서브작가	12	25.0	8.3	25.0	25.0	16.7	100.0
	보조작가	2	0.0	0.0	50.0	50.0	0.0	100.0
	자료조사	1	0.0	0.0	0.0	0.0	100.0	100.0
	취재작가	6	16.7	0.0	16.7	50.0	16.7	100.0
	카메라감독	2	0.0	0.0	0.0	100.0	0.0	100.0
	촬영보조	5	0.0	0.0	20.0	60.0	20.0	100.0
	그래픽	2	0.0	0.0	0.0	100.0	0.0	100.0
	CG	5	0.0	0.0	20.0	60.0	20.0	100.0
	편집	7	0.0	42.9	42.9	14.3	0.0	100.0
	음향음악	1	0.0	0.0	100.0	0.0	0.0	100.0
	AD	10	10.0	0.0	20.0	60.0	10.0	100.0
	MD	1	0.0	0.0	0.0	100.0	0.0	100.0
	인제스트	3	0.0	33.3	0.0	66.7	0.0	100.0
	아카이빙	3	0.0	33.3	66.7	0.0	0.0	100.0
	기술보조	1	0.0	0.0	100.0	0.0	0.0	100.0
	기타	3	0.0	0.0	33.3	66.7	0.0	100.0

〈표 5-6〉 문체부 방송 3사 근로자성 판단 정량적 분석 결과2(단위: %)

		인원(명)						비율(%)					
		하 (6점 미만)	중하 (6~9점 미만)	중 (9~12 점 미만)	중상 (12~15 점 미만)	상 (15점 이상)	계	하 (6점 미만)	중하 (6~9점 미만)	중 (9~12 점 미만)	중상 (12~15 점 미만)	상 (15점 이상)	계
전체		7	12	29	54	8	110	6.4	10.9	26.4	49.1	7.3	100.0
방송사	K TV	0	8	15	35	8	66	0.0	12.1	22.7	53.0	12.1	100.0
	아리랑TV	4	2	12	11	0	29	13.8	6.9	41.4	37.9	0.0	100.0
	국악방송	3	2	2	8	0	15	20.0	13.3	13.3	53.3	0.0	100.0
직종 직무	PD	1	1	8	15	0	25	4.0	4.0	32.0	60.0	0.0	100.0
	아나운서	0	2	2	6	0	10	0.0	20.0	20.0	60.0	0.0	100.0
	리포터	0	1	0	0	0	1	0.0	100.0	0.0	0.0	0.0	100.0
	메인작가	1	2	2	4	1	10	10.0	20.0	20.0	40.0	10.0	100.0
	서브작가	3	1	3	3	2	12	25.0	8.3	25.0	25.0	16.7	100.0
	보조작가	0	0	1	1	0	2	0.0	0.0	50.0	50.0	0.0	100.0
	자료조사	0	0	0	0	1	1	0.0	0.0	0.0	0.0	100.0	100.0
	취재작가	1	0	1	3	1	6	16.7	0.0	16.7	50.0	16.7	100.0
	카메라감독	0	0	0	2	0	2	0.0	0.0	0.0	100.0	0.0	100.0
	촬영보조	0	0	1	3	1	5	0.0	0.0	20.0	60.0	20.0	100.0
	그래픽	0	0	0	2	0	2	0.0	0.0	0.0	100.0	0.0	100.0
	CG	0	0	1	3	1	5	0.0	0.0	20.0	60.0	20.0	100.0
	편집	0	3	3	1	0	7	0.0	42.9	42.9	14.3	0.0	100.0
	음향음악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AD	1	0	2	6	1	10	10.0	0.0	20.0	60.0	10.0	100.0
	MD	0	0	0	1	0	1	0.0	0.0	0.0	100.0	0.0	100.0
	인제스트	0	1	0	2	0	3	0.0	33.3	0.0	66.7	0.0	100.0
	아카이빙	0	1	2	0	0	3	0.0	33.3	66.7	0.0	0.0	100.0
	기술보조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기타	0	0	1	2	0	3	0.0	0.0	33.3	66.7	0.0	100.0
프로그램	보도(뉴스)	0	4	14	34	6	58	0.0	6.9	24.1	58.6	10.3	100.0
	드라마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예능	3	1	4	1	0	9	33.3	11.1	44.4	11.1	0.0	100.0
	시사교양	1	5	3	10	2	21	4.8	23.8	14.3	47.6	9.5	100.0
	스포츠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라디오	1	1	5	6	0	13	7.7	7.7	38.5	46.2	0.0	100.0
	연예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문화예술	2	1	2	3	0	8	25.0	12.5	25.0	37.5	0.0	100.0

□ 문체부 방송사 프리랜서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방송사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문제 문제점

- 첫째, 문체부 방송사는 청년 및 여성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거의 절대 다수 활용되는 곳임. 이는 방송산업에서 지극히 불안정한(precarious) 노동 위치에서 방송 제작 및 지원과 같은 노동이 오랫동안 비공식화된 비가시적 영역으로 취급 받고 경제적 보상으로부터 배제된 채 일을 한 것임. 방송사 내 프리랜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구조(여성 월 평균 보수 220만원/남성 224.9만원)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문체부 방송 3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문제 해결은 각 방송사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함. 대표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동일 유사 업무의 보수 차이)나 ‘성차별적 고용구조’(여성 227명, 남성 121명) 즉, ‘성평등(gender equality)한 방송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대책’ 마련이 필요함. 프리랜서 문제는 방송사에서도 오래된 숙제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제는 고용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문체부 방송 3사의 프리랜서 ‘노동자성 문제’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은 소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비중이 적지 않았음. 대표적으로 지시감독 지표들 중 약 80% 이상 차지하는 응답이 6개(12개 중)나 되었음. 이에 각 방송사의 프리랜서 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계약이나 업무 수행 과정은 전통적인 지시 감독은 물론 부당한 차별은 받는 것은 종사상 지위를 프리랜서로 하기 때문임.

○ 문제부 방송사 프리랜서 개선 과제⁹⁾

가. 고용구조 개선 문제

- (1) 사실상 노동자로 고용해야할 업무의 ‘근로자’ 검토
- (2) 프리랜서 계약 형태와 계약조건 개선(프로그램 계약)

나. 노동환경 개선 문제

- (1) 프리랜서 낮은 보수/저소득 구조 개선(표준보수 기준 수립)
- (2) 최소 휴일휴가, 교육훈련, 장비 비품 지급, 대기시간 인정 등

다. 제도개선 방향 과제

- (1) 방송3사 프리랜서 해결 문제부 + 각 방송사 대책TF 구성
- (2) 실태조사와 고용구조 및 환경 개선 방향 도출 및 점검

9)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31일(월)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바 있음. 문제부는 영화업계나 SBS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임. 문제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임(글로벌뉴스통신GNA(<http://www.globalnewsagency.kr>))

[참조]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 캐나다 프리랜서 노동조합(미디어 길드 캐나다 지부 CMG) 단체협약 및 가이드라인 사례

1. 캐나다 CBC와 CMG 단체협약

- CMG는 CBC와의 단체협약에 프리랜서 노동자 관련 항목(Article 30)을 삽입함으로써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급여체계와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음.
- 단체협약의 30.5.9 항은 A. 오디오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직종별 요율, B. 비디오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직종별 요율, C. 텍스트 기반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직종별 요율 아이템의 길이 또는 단어 수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음. 단, 제시된 요율은 최저요율이고, 담당 정규직 프로듀서와의 협의 하에 그 이상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C. 텍스트 기반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중, 트위터나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Text-based Reportage)는 첫 두 시간은 시간 당 \$50, 이후에는 시간당 \$25을 지급받고 하루 최대 \$280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프리랜서의 공정한 채용과 대우를 위한 가이드라인' 팸플릿 제작, 배포.

(We're on the same team, A producer's guide to hiring CBC freelancers fairly)" ['프로듀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프리랜서는 당신의 동료 조합원이다. 전문 프리랜서 프로듀서, 기자, 조사원(researcher), 카메라 인력 그리고 기술 인력들은 정규직들과 협업해 양질의 CBC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료들이다.
- ii) '그들의 생계를 위한 노동이다(It's a living)': 프리랜서는 당신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미디어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나 그들은 별도의 관리 및 고용관련 비용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고, 당신이 정규직으로서 누리는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프리랜서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비용과 어려움을 고려해서,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 iii)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프리랜서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곧 당신은 물론 모든 조합원들의 하고 있는 업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프리랜서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 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들과의 질 높은 협업을 통해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이다.
- iv) '모든 프리랜서들은 제각각 다르다(Every freelance contributor is different)': 계약협상은 해당 프리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력이 많은 프리랜서 제작인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v)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Paying Minimums is not negotiating)': CBC-CMG 단체협약은 프로듀서가 프리랜서와 선의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당신이 프리랜서를 채용할 권한을 가진다면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에 걸 맞는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도록 해라. 언제나 당신의 동료제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정한 계약을 맺기 위한 프리랜서들의 가이드라인 팸플릿 제작, 배포.

(Taking the 'Free' out of Freelancer, A freelancer's guide to negotiating a fair contract)"

['프리랜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내용]

- i)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We are all on the same team)': 당신과 당신에게 일을 맡기는 정규직 프로듀서는 동료 조합원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의 동료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당신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정규직 프로듀서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이익을 봉사하는 것임을 그에게 늘 상기시키도록 해라.
- ii) '서면계약을 작성하라(In black and white)':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상결과와 정규직 프로듀서가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은 당신이 공정한 대가를 받으면 일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 iii)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라(Show me the money!)': 경력 프리랜서로서 최저요율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라. 당신이 받는 요율은 곧 당신의 경험과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5년 경력의 CBC 정규직 기자는 결코 신입기자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iv) '그것은 당신의 저작물이다(It's your work)': 프리랜서 제작참여자로서 당신은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그것은 당신의 지적재산이다. 따라서 당신이 저작권을 팔거나 양도한다면 그에 걸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 v) '그것은 사업이다(It's business)': 당신의 노동력을 CBC에 판매하는 것은 곧 사업관계임을 명심하고 대처해야 한다. 당신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적절치 않다면, 그렇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은 요율을 협상할 수 없다면 일을 맡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당신의 시간과 전문성은 소중한 것이고, 다른 곳에서 그에 상당한 더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여라·조형근(2011), 「드라마 제작환경과 방송실연자의 권리보호 실태와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김종진(2020), 「방송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실태조사」, 《KLSI 이슈페이퍼》, 제14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종진·노성철 외(2018),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tbs 교통방송.
- 김종진·정성진 외(2019), 「KBS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 연구 보고서」, 한국방송공사.
- 방송작가유니온(2020), 「보도국작가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 실태조사」,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 지부.
- 신지형 외(2020),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안은정(2017), 「드라마 제작의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실태」, 「방송제작환경개선 토론회 - 카메라 뒤에 사람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한정애 의원실
- 안임준 외(2016),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방송인력 실태조사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이경희·김근주·노성철(2020), 「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질」,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기 외(2017), 「지상파 방송 산업 노동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이찬구 외(2022),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전파진흥협회(2016), 「방송산업 활성화 위한 프리랜서 방송인력 실태조사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 정윤경 외(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1

강은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문체부 방송 3사 표준 계약서 법률 검토

강은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방송3사의 인력 운영 현황

- 3사 프로그램 제작 참여 인력에 한해서는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수가 많음. 아리랑 TV의 경우 일부 자회사 소속 직원들이 존재함. 방송3사의 프로그램 제작 실무는 실질적으로는 방송3사의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PD, CP 등 상위 연출직은 주로 정규직이었으나 그 외 직종은 분야와 무관하게 프리랜서 또는 도급(위탁)으로 분류하였음. 일부 정규직 기술직이 존재하였음.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주로 여성이, 정규직의 경우 국악 방송을 제외하고는 주로 남성이 많았음.
- 방송 3사에서 근무하는 방송작가는 모두 프리랜서로 분류되었음. 연출감독(PD)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조연출도 마찬가지로 모두 프리랜서로 분류되었음.
- 아래와 같은 분류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작 인력은 방송3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위탁·도급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 KTV 프로그램 제작 인력 운영 현황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명)
		남	여	계	남	여	계	
17개	PD	20	6	26	20	11	31	57
	AD				10	13	23	23
	작가				0	19	19	19
	보조작가				2	13	15	15
	자료조사				4	11	15	15
	MC				5	5	10	10
	CG				3	10	13	13
	성우				1	0	1	1
	VJ				0	3	3	3
	리포터				1	1	2	2
	음악감독				1	0	1	1
	기타				0	6	6	6
	총합계		20	6	<u>26</u>	47	92	<u>139</u>

〈표 2〉 아리랑 TV 프로그램 제작 인력 운영 현황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도급(위탁)			자회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2개	CP	8		8										8
	PD	2	13	15				2	4	6	6	19	25	46
	조연출(AD, FD)							2	8	10	3	15	18	28
	기자	2	20	22								1	1	23
	카메라	13		13	7		7	11		11	23	3	26	57
	오디오맨							8		8				8
	CG		1	1					14	14				15
	아카이브								3	3				3
	뉴스라이터										1	2	3	3
	뉴스에디터										4		4	4
	기상캐스터											2	2	2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도급(위탁)			자회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부조	40		40				2		2				42
	주조	32	5	37										37
	작가										1	26	27	27
	영어작가										1	1	2	2
	번역작가										1	9	10	10
	진행자											1	1	1
	성우										1		1	1
	의상											2	2	2
	더빙											1	1	1
	분장											1	1	1
	고정 출연자											1	1	1
	MC				2	2	4				1		1	5
	스코아맨											3	3	3
	그래픽											1	1	1
	경호				4		4				8	2	10	10
	무대감독										1		1	1
	영상										2		2	2
	조명	1		1	5		5				1		1	7
	VJ											1	1	1
	전식										2		2	2
	PA				1		1				1	2	3	4
	구조물										6		6	6
	브레이크아웃										1	2	3	3
	음향 및 악기				6		6							6
	사전 MC										1		1	1
	기술(audio)	4		4										4
	기술(video)	2		2							1		1	2
	총합계	104	39	143	25	2	27	25	29	54	66	95	161	384

〈표 3〉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인력 운영 현황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기간제			도급(위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개	CP	1	7	8										8
	PD	6	8	14	1		1				3	3	6	4
	프로듀서		3	3										3
	AD										1	4	5	5
	조연출											8	8	
	편집감독											1	1	1
	작가											19	19	7
	기술	3		3				2		2	3	2	5	2
	영상	1		1				1		1				2
	오디오							2		2				2
	카메라							11		11				11
	특수카메라							2		2				2
	조명							1		1				1
	음향							2		2				2
	분장							2		2				2
	종합편집									1	1			1
	편집										1		1	1
	CG											1	1	1
	문자그래픽											1	1	1
	보조							2		2				2
차량운행							2		2				2	
스코어리더											1	1	1	
총합계		11	18	<u>29</u>	1	0	1	28	1	<u>29</u>	8	40	<u>48</u>	107

2. 각 방송사 표준계약서 검토

가. 개요

- KTV는 표준 근로계약서, 집필 표준계약서,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음. 표준업무위탁계약서의 경우 PD, AD, MC, 성우, VJ, 촬영요원, 편집요원, CG 등 작가 직군을 제외한 직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메인, 보조작가와 자료조사는 집필 표준계약서를 적용함.

- 아리랑 TV는 근로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계약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위탁계약서를 제출하였음. 방송 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을 수급한 제작사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 위탁계약서는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의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임.
- 국악방송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라디오·영상),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라디오·영상),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서 그리고 영상 제작 협력 업체 선정 계약서를 제출하였음.
- 발제에 따르면 KTV와 아리랑TV는 방송사 표준계약서 다음으로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국악방송의 경우 방송사 표준계약서와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방송 직군의 근로자성 문제

- 발제에서도 언급되었듯 방송사 비정규직 규모와 처우가 문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제기되었음. 특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또는 하도급, 위탁으로 취급받아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다수 시정되었음. 대법원 2002. 7. 27.에서 이미 KBS에서 근무하던 F.D.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판단되었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2022년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YTN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12인이 근로자로 판단되었음. 이외에도 프리랜서 VJ, PD, 촬영팀 등 기술팀 스태프, 촬영감독, 아나운서, 방송작가, MD 등 방송직군을 넘나드는 근로자성 판단이 나왔음.¹⁾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업무 내용

1) 강은희, 2022. 9. 29., '법적 대응 현황과 평가,'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 다만 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 요소들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5441 판결).

- 발제에서도 문제부 방송3사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CG와 촬영, 취재작가, 메인작가 등은 자체 판단지표에서 근로자성 '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음. 특히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KTV(89.4%), 국악방송(73.7%), 아리랑 TV(69.0%) 모두에서 채용면접 시 방송사 직원이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제작관련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한다'고 대답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율도 KTV(69.7%), 아리랑TV(55.2%), 국악방송(53.3%) 순으로 나타났음.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에 해당할 수 있는 '보고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은 아예 없었고, KTV는 9%에 불과했음.
- 특히 프리랜서 또는 하도급위탁의 경우 근로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의 방식에 있어 자율성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데에 조사 대상자 본인 소속 용역업체 직원의 영향력은 아예 없거나 미미했고, 노동조건, 채용공고, 업무결과 및 업무과정 수정지시, 근무장소, 휴가,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 등, 사실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방송사 소속 직원이 결정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국악방송은 출·퇴근 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무시간 결정과 관련하여, 방송사 소속 직원이나 소속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기타 인물이 결정한다는 응답비율이 53.3%로 많았음. 아리랑TV는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주체로 방송사 소속 직원과 기타인물이 동률(44.8%)을 보였으며,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사람의 비율은 기타(48.3%)가 방송사 소속 직원(44.8%) 비슷했음.

- 상급자에 의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휘·감독과, 업무 수행 방식 즉 노동조건 결정이 근로자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업무수행을 ‘수시로 보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방송3사 모두의 경우 각 조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다는 점, 방송사 소속 직원이 업무 조건을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는 점은 문체부 방송3사에서 도급·위탁 계약자 또는 프리랜서로 밝힌 노동자 중에도 업무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들게끔 함.
- 따라서 방송3사의 표준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외하고 집필표준계약서와 업무위탁 또는 도급 계약서를 집중적으로 보아, 그 계약서의 명칭과 다르게 업무위탁·도급의 범위를 넘어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암시하는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살펴볼 예정임.

다. 계약서 검토

1)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3사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두고, 방송사별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정한 내용으로 보였음.

가) 원고료의 근로대가성

제3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내용	프로그램명	소리를 배웁시다	
	방송일시/시간/회수	2023. 03. 20. - 2023. 12. 20. / 14시 / 주 2회	
	제작 형식	스튜디오 녹화 (12층 공개홀)	
	제작 길이·편수	1회당 60분물 / 80회(예정)	
원고 인도 기일		제작일로부터 7일 이전	
원고료 (지급시기별)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원 고 료	!(원고 40회분)	방송개시 후 1개월 단위 (예금주:)

① 사례비는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미 변경)이다

② 원고료 (내역별)	구분	금 액	지 급 시 기
	기획료	원	
	구성료	원	
	집필료	800,000 원	
	자료비	원	
	기타	원	
	합 계	800,000원	월말 정산
전속 여부			
기타 사항			

* 1. 원고료는 ① 지급시기별 ② 내역별 중 선택하여 작성 가능하다

- 3사의 계약서 모두 문제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가 제시하는 표와 유사하게, 프로그램명과 방송일시 등을 기재한 표로, 집필 업무의 내용(제작 길이와 편수, 제작형식, 원고료 등)을 명시하였음. 위 계약서들에 따르면 원고 작성에 대한 대가로 회당 고정된 원고료 또는 월마다 고정적인 원고료가 정산됨. 위 계약 당사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방송의 성공 또는 실패와 연동된 보수가 아닌 원고료 작성 노동에 대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음.
- 문제부의 방송작가 표준 집필계약서 원안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방송작가의 계약 형식이 방송의 성공 또는 실패와 연동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방송작가의 원고료의 근로 대가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음.

나) 작가의 의무

제7조(작가의 의무) ① '작가'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집필·구성 등 창작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작가'와 '방송사'가 제3조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가'는 본 계약 제4조에 의한 계약 기간 중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자신의 집필원고, 구성안 등 창작물이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작가'는 방송 관련 정부기관 및 '방송사'가 정하고 있는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작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사의 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제7조 제4항으로 작가의 의무로 '방송사'가 장한 제작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작업에 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사'의 제작 가이드라인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는 업무 내용을 결정짓는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음.

- 동조 제5항은 '작가'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위장 프리랜서'의 경우 외견상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서 조항을 통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신상의 규율을 받게 됨. 오히려 근로자의 경우 비위 행위가 존재할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에 따라 처분이 결정됨에 반해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보호 없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프리랜서가 받는 불이익 정도가 중하고, 방송사의 통제가 프리랜서에게 더 강하게 작동할 여지도 존재함.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작가'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3. '방송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상대방의 계약내용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가'가 원고를 인도하여 '방송사'가 인수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거나, 제작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5. '방송사'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하도록 작가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6. '방송사' 또는 '작가'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상대방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② '방송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서면으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작가'가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방송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 3사 모두 제20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이 조항은 작가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방송사에게 작가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함. 위 나.항의 조항과 함께 작가에 대한 방송사의 통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조항임. 나.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방송사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 나아가 재계약 거부를 통하여 충분히 방송작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은 ‘과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이익의 형태’로는 구두경고가 38.2%였고, 기타 33.6%, 보수 감액 11.8%뿐만 아니라 제작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 10.9% 등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음.

라) 원고의 수정 지시

제14조(원고의 인도) ① ‘작가’는 제3조에 따른 인도기일에 원고를 인도하여야 하며, ‘방송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인도 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방송사’는 인도된 원고가 계약상의 제작 의도 및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방송사’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작가’는 ‘방송사’와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작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된 원고가 프로그램 제작에 객관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는 원고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 3사는 원고의 수정에 대하여 제13조 또는 제14조에서 위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방송사는 방송작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이는 방송사의 방송작가 업무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게끔 하는 조항이라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작가와 방송사의 협의에 의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방송사의 ‘수정 요구’가 지시에 가까운지 또는 제안에 가까운지는 이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함.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방송사' 또는 '작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작가'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그러나 3사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에서 수정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를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방송사의 수정 요구가 있으면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 이는 방송사의 '수정 요구'가 작가의 판단에 따라 그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는 이행하여야 하는 '지시'이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마) 업무의 대행 가능성

제8조(계약의 위임 및 대리, 권리·의무 이전금지) ① '작가'는 본인의 집필활동을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대리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단, 원고 집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사전 서면 동의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작가'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집필활동을 제3자에게 대리하거나 대

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작가'의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방송사'는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제작과정에서의 원고 사용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 법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라 보고 있음.

- 그런데, 3사 모두 작가에 대하여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게끔 하거나 대리하게끔 하는 것을 계약서에서 금지하고 있음.

바) 소결

- 집필 표준계약서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방송작가는 방송사로부터 원고 수정 요구를 받으며 해당 요구를 정당한 사유 불수용할 경우 계약 해제, 해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원고 수정 요구에 어느정도 구속되며,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지급받는 원고료의 근로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의 인력현황표에 따르면 방송작가는, 3사에서 모두 프리랜서로만 일하고 있음. 특히 다른 방송직군(PD, 무대감독, 촬영 등)의 경우 정규직인 경우도 존재함에 비해 방송작가 중 정규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사의 방송작가 ‘프리랜서 고용 관행’이 적절한지 묻게 됨.
-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63518 판결에서 법원은 MBC 보도국에서 일하던 방송작가 2명을 근로자라고 보았다는 점, 그리고 2021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하여 지상파 3사의 방송작가 중 42%(152명)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위와 같은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2)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위탁계약서

- 3사의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위탁계약서는 문체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를 방송사별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수정한 내용으로 보였음.

가) 자율성의 보장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방송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사의 계약서는 기본원칙으로 방송을 제작함에 있어 방송제작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 중에 이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이 존재하며 위 조항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음.

제4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 같은 계약서 제4조에서는 '스태프'의 의무를 방송사의 지시를 성실히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지시에 따를 의무가 부여된 스태프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설문조사에서도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에 해당하는 '촬영'이 가장 높은 비율로 프로그램 제작관련자의 업무지시가 제작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였음(71.4%). 또,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에 해당하는 조연출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80.0%)로 '업무수행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한다고 답하였음.
- 제1조의 내용과 달리 계약 조문상으로도, 설문상으로도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 방송사의 지휘·감독권한

제4조(‘스태프’의 의무) ① ‘스태프’는 제작에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방송사’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이 제공하는 역무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④ ‘스태프’는 ‘방송사’가 정하고 있는 제작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규제 기관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⑤ 본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에 ‘스태프’로서 참여하는 자는 사회적 물의(폭행,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사의 계약서는 스태프의 의무로 ‘제반 지시에 따를 것,’ ‘방송사가 정하고 있는 제작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스태프와 방송사의 관계가 근로 관계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도급, 위탁 관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스태프의 업무수행에 있어 방송사의 확인 권한이 존재할 지언정, 지시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은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그런데 스태프의 경우 계약서 조항으로 방송사의 지시를 성실히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스태프가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임.
- 또한 스태프의 경우 방송사의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방송사의 제작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위와 같은 방송사의 제작에 관한 규칙은 스태프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업무지시와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음.
- 지시에 대한 이행 의무, 방송사의 규칙에 대한 준수 의무의 규정은 스태프가 사실상 업무를 본인 판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함을 보여줌.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① '방송사'는 음향 및 특수효과, 세트 등과 같은 업무의 완성물이나 역무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스태프'와 협의한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까지 업무과 관련된 완성물을 인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는 '스태프'가 수행하는 업무가 프로그램 제작방향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스태프'에게 설명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스태프'의 업무 수행 정도 및 내용을 검사하고 업무의 내용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준이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완성물의 수정요구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송사'가 업무의 완성물을 납품받아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역무 제공의 경우, '스태프'는 계약기간 동안 '방송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업무의 완성물을 수령하는 경우, '방송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스태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역무 제공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 통지 절차 없이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정한 자의 판단에 따른다.

- 3사는 위와 같은 규정에서, 제4항에서 스태프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사의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은 스태프가 방송사의 스태프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스태프는 방송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음.
- 설문조사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채용공고, 노동조건, 업무결과 및 과정, 근무장소, 휴가(병가),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의 결정 및 시행주체는 방송사 소속 직원이었음.

라) 근무 장소의 지정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는 '스태프'의 고용인에 대한 재해관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방송사'가 제2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근무장소의 지정의 경우 근로자임을 나타내는 징표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위조항은 방송사가 업무를 수행을 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마) 제3자에 의한 업무 대체 불가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 ‘방송원’ 과 ‘스태프’ 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법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라 보고 있음.
- 그런데, 3사 모두 작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스태프에 대해서도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바)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통한 불이익

제21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스태프’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방송사’ 또는 ‘스태프’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인수합병, 영업양도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스태프’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스태프’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스태프’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

여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스태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8. '스태프'의 인원·장비 및 수탁내용 제작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9. '스태프'가 임금 미지급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은 스태프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방송사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함. 방송작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방송사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 나아가 재계약 거부를 통하여 충분히 방송작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은 '과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이익의 형태'로는 구두경고가 38.2%였고, 기타 33.6%, 보수 감액 11.8%뿐만 아니라 제작 프로그램 재계약 거부 10.9% 등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음.

3. 나가며

- 근로자성 판단이 계약서의 명칭 또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실질에 있어, 계약서 조항만을 두고 '근로자이다' 또는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위와 같이 일부 계약서 조항의 경우, 계약서 조항만으로 계약 당사자에 대한 방송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나타나기도 함.
- 또한 인력현황 통계에 따르면 방송 3사 모두 방송3사 프로그램 제작 참여 인원 중 프리랜서의 수가 정규직의 수 보다 많다는 점, 방송 제작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인력 중 상당수가 프리랜서라는 점, CP 또는 PD와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 CP나 PD로부터 비교적 지휘·감독을 받을 여지가 큰 조연출 등 조수급 스태프들이

오히려 프리랜서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고, 특히 KTV의 경우 프로그램의 CP나 PD만이 정규직인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동일한 직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직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도 일부 노동자는 정규직이고 일부는 프리랜서라는 점, 무엇보다 방송 제작 업무는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직원 PD, 기자, VJ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7. 12. 7. 선고 2017 구합58731 판결)”는 점에서 3사 내부의 인력 중 일부는 프리랜서 또는 도급위탁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됨.

- 계약서 내용과, 3사의 인력현황의 실질은 “문체부 방송 3사의 프리랜서 ‘노동자성 문제’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은 소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는 발제의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봄.

〈별첨1〉 2023 KTV 프로그램별 참여 인력 현황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명)
			남	여	계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생방송 대한민국 1부(Live)	PD	1		1			0			0	2	1	3	4
		AD			0			0			0	0	1	1	1
		작가			0			0			0		1	1	1
		보조작가			0			0			0	1	3	4	4
		자료조사			0			0			0	1	1	2	2
		MC			0			0			0	1	1	2	2
		CG			0			0			0		1	1	1
		총합계	1	0	1	0	0	0	0	0	0	0	5	9	14
2	생방송 대한민국 2부(Live)	PD	1		1			0			0	2	1	3	4
		AD			0			0			0	1	1	2	2
		작가			0			0			0		1	1	1
		보조작가			0			0			0	3	3	3	3
		자료조사			0			0			0	2	2	2	2
		MC			0			0			0	1	1	1	1
		CG			0			0			0	2	2	2	2
		총합계	1	0	1	0	0	0	0	0	0	3	11	14	15
3	생방송 정책&이슈(Live)	PD	1		1			0			0	2	1	3	4
		AD			0			0			0	3	3	3	3
		작가			0			0			0	1	1	1	1
		보조작가			0			0			0	3	3	3	3
		자료조사			0			0			0	1	1	1	1
		MC			0			0			0	1	1	1	1
		CG			0			0			0	2	2	2	2
		총합계	1	0	1	0	0	0	0	0	0	3	9	12	13
4	KTV 대한뉴스(Live)	PD	1		1			0			1	1	2	3	
		AD			0			0			1	1	2	2	
		작가			0			0			1	1	1	1	
		자료조사			0			0			2	2	2	2	
		MC			0			0			1	1	1	1	
		CG			0			0			0	2	6	8	8
		총합계	1	0	1	0	0	0	0	0	0	4	12	16	17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명)
			남	여	계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	KTV 뉴스(Live)	KTV 뉴스(Live) PD	3			3			0				3	1	4
		AD			0			0				4	2	6	6
		자료조사			0			0				3	2	5	5
		총합계	3	0	3	0	0	0	0	0	0	10	5	15	18
6	국민 리포트	국민 리포트 PD				0			0			0		2	2
		총합계	0	0	0	0	0	0	0	0	0	0	2	2	2
7	정책플랫폼 Korea TV 생활&정책	PD	1	0	1			0			0	3	0	3	4
		작가			0			0			0	0	1	1	1
		보조작가			0			0			0	0	2	2	2
		MC			0			0			0	0	1	1	1
		총합계	1	0	1	0	0	0	0	0	0	3	4	7	8
8	살어리랏다 시즌5	PD	1	0	1			0			0	2	0	2	3
		AD			0			0			0	0	1	1	1
		작가			0			0			0	0	2	2	2
		자료조사			0			0			0	0	2	2	2
		성우			0			0			0	1	0	1	1
		총합계	1	0	1	0	0	0	0	0	0	3	5	8	9
9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PD	2	0	2			0			0	1	1	2	4
		작가			0			0			0	0	2	2	2
		MC			0			0			0	1	0	1	1
		총합계	2	0	2	0	0	0	0	0	0	2	3	5	7
10	한미동맹 70주년 새로보는 리버티뉴스	PD	1		1			0			0	1		1	2
		작가			0			0			0		1	1	1
		총합계	1	0	1	0	0	0	0	0	0	1	1	2	3
11	시청자가 만드는 TV 하이큐	PD	1		1			0			0			0	1
		AD			0			0			0	1		1	1
		총합계	1	0	1	0	0	0	0	0	0	1	0	1	2
12	온라인 콘텐츠 (생방송)	PD	2	1	3			0			0		1	1	4
		AD			0			0			0	2	3	5	5
		작가			0			0			0		2	2	2
		MC			0			0			0	1	1	2	2
		CG			0			0			0	1		1	1
		리포터										1	1	2	2
		음악감독			0			0			0	1		1	1
		총합계	2	1	3	0	0	0	0	0	0	6	8	14	17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명)
			남	여	계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3	온라인 콘텐츠 (유니크)	PD	1	1	2			0			0		2	2	4
		작가			0			0			0		1	1	1
		자료조사			0			0			0		1	1	1
		CG			0			0			0		1	1	1
		총합계	1	1	2	0	0	0	0	0	0	0	5	5	7
14	온라인 콘텐츠 (채널운영)	PD		2	2			0			0	1		1	3
		작가			0			0			0		2	2	2
		기타			0			0			0		6	6	6
		총합계	0	2	2	0	0	0	0	0	0	1	8	9	11
15	온라인 콘텐츠 (숏폼 콘텐츠)	PD	2		2			0			0	1		1	3
		작가			0			0			0		1	1	1
		보조작가			0			0			0		1	1	1
		VJ			0			0			0		3	3	3
		총합계	2	0	2	0	0	0	0	0	0	1	5	6	8
16	온라인 콘텐츠 (OTT 제작)	PD	1	1	2			0			0	1		1	3
		AD			0			0			0	1	1	2	2
		작가			0			0			0		2	2	2
		보조작가			0			0			0		1	1	1
		MC			0			0			0	1		1	1
		총합계	1	1	2	0	0	0	0	0	0	3	4	7	9
17	온라인 콘텐츠 (기획특집)	PD	1	1	2			0			0			0	2
		작가			0			0			0		1	1	1
		보조작가			0			0			0	1		1	1
		총합계	1	1	2	0	0	0	0	0	0	1	1	2	4

〈별첨2〉 2023 아리랑TV 프로그램별 참여 인력 현황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도급(위탁)			자회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Arirang News (1) 오전> - 09시 New Day at Arirang - NEWS Generation - 12시 Arirang News - 14시 The Daily Report	CP	2		2						0					2	
		PD			0				1	2	3						3
		조연출(AD, FD)			0				1	4	5						5
		기자	1	10	11							0					11
		카메라	6		6				3		3						9
		오디오맨			0				4		4						4
		CG		1	1					6	6						7
		아카이브								1	1						
		뉴스라이터										1	1	2			2
		뉴스에디터										2		2			2
		기상캐스터											1	1			1
		부조	3		3												3
		주조	2	1	3												3
		총합계			14	12	26	0	0	0	9	13	22	3	2	5	52
2	<Arirang News (2) 오후> - Issues & Insiders - 18시 Newscenter - Within the Frame - 21시 Arirang News	CP	2		2											2	
		PD							1	2	3						3
		조연출(AD, FD)								1	4	5					5
		기자	1	10	11								1	1			12
		카메라	7		7				4		4						11
		오디오맨							4		4						4
		CG								6	6						6
		아카이브								2	2						2
		뉴스라이터											1	1			1
		뉴스에디터										2		2			2
		기상캐스터											1	1			1
		부조	3		3												3
		주조	2	1	3												3
		총합계			15	11	26	0	0	0	10	14	24	2	3	5	55
3	Peace & Prosperity	CP	1		1											1	
		PD	1	1	2							1	1	2		4	
		작가											3	3			3
		주조	3		3												3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도급(위탁)			자회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	The Globalists	CP	1		1											1
		PD		2	2						1	1	2			4
		카메라							2	2	2		2			4
		작가									1	1	2			2
		영어작가									1					0
		분장										1	1			1
		진행자										1	1			1
		부조	6		6											6
		주조	3		3											3
5	Diplomat Talks	CP														0
		PD		1	1											1
		AD										3	3			3
		FD										0	0			0
		작가										3	3			3
		카메라										3	3			3
		번역작가										1	1			1
		성우									1		1			1
		의상										2	2			2
		주조	3		3											3
6	1Day 1Korea & Perform Arts Reload	PD		5	5							2	3	5		10
		AD										2	2			2
		FD										1	1			1
		작가										6	6			6
		카메라										7	7			7
		더빙										1	1			1
		번역작가										1	2	3		3
		고정출연자										1	1			1
		주조	3		3											3
7	After School Club & After ASC	PD		1	1							2	2	4		5
		AD										1	1			1
		작가										3	3			3
		MC				2	2					1		1		3
		번역작가										3	3			3
		FD										1		1		1
		카메라										1		1		1
		부조	8		8											8
		주조	2	1	3											3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도급(위탁)			자회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	Simply K-pop Con-Tour	PD	1		1								3	3	4
		작가											4	4	4
		번역작가											2	2	2
		FD											3	3	3
		스코아맨											3	3	3
		카메라									10		10		10
		그래픽											1	1	1
		경호											8	2	10
		무대감독											1		1
		영상											2		2
		조명											1		1
		VJ											1	1	1
		전식											2		2
		PA											1	2	3
		구조물											6		6
		브레이크아웃											1	2	3
		부조		8		8									
주조		3		3										3	
9	Secret Airlines	PD		1	1								2	2	3
		AD											2	2	2
		작가											2	2	2
		번역작가											1	1	1
		카메라									3		3		3
		PA				1		1							1
		MC					2	2							2
		주조	3		3										3
10	I'm LIVE	PD		1	1								2	2	3
		AD									1	1	2	2	
		FD									1	2	3	3	
		작가										2	2	2	
		영어작가										1	1	1	
		카메라				7		7							7
		조명				5		5							5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도급(위탁)			자회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음향및악기				6		6							6
		경호				4		4							4
		사전MC										1		1	1
		부조	4		4										4
		주조	3		3										3
11	Playlist UP:Feel Like 11	CP	1		1										1
		PD										1		1	1
		작가										3		3	3
		기술(audio)	2		2										2
		기술(video)	1		1										1
		카메라							1		1				1
		조명	1		1										1
		CG								1	1				1
		부조	4		4				1		1				5
주조	3	1	4										4		
12	Radio'Clock	CP	1		1										1
		PD		1	1										1
		작가										3		3	3
		기술(audio)	2		2										2
		기술(video)										1		1	1
		카메라							1		1				1
		CG								1	1				1
		부조	4		4				1		1				5
		주조	3	1	4										4

〈별첨3〉 2023 국악방송 프로그램별 참여 인력 현황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기간제,파견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TV음악풍경	CP		1	1											1
		PD										1	1			1
		총합계		1	1							1	1			2
2	국악콘서트 판 스페셜	CP/ PD		1	1											1
		편집감독										1	1			1
		작가										1	1			1
		총합계		1	1							2	2			3
3	소리를 배웁시다	CP		1	1											1
		PD	1		1											1
		AD									1	2	3			3
		작가										3	3			3
		기술							1	1						1
		영상							1	1						1
		오디오							1	1						1
		카메라							5	5						5
		특수카메라							2	2						2
		조명							1	1						1
		음향							2	2						2
		분장							2	2						2
		종합편집								1	1					1
		CG											1	1		1
		문자그래픽											1	1		1
총합계	1	1	2				15	1	16	1	7	8		26		
4	국악무대 컬렉션	CP		1	1											1
		프로듀서		1	1											1
		PD										1	1		1	
		총합계		2	2							1	1		3	
5	국악방송 스페셜	CP		1	1											1
		PD		1	1											1
		AD										1	1		1	
		작가										1	1		1	
		총합계		2	2							2	2		4	

연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	국악플러스	CP		1	1										1
		프로듀서		1	1										1
		PD									1		1		1
		작가										1	1		1
		총합계		2	2						1	1	2		4
7	국악무대	CP		1	1										1
		PD	1		1										1
		AD										1	1		1
		작가										1	1		1
		편집									1		1		1
		자막							1	1					1
		기술							1	1					1
		영상	1		1										1
		오디오							1	1					1
		카메라							6	6					6
		보조							2	2					2
		차량운행							2	2					2
		스코어리더											1	1	1
총합계	2	1	3				13	13	1	3	4		20		
8	명상요가	CP	1		1									1	
		프로듀서		1	1									1	
		PD									1		1	1	
		총합계	1	1	2						1		1	3	

〈별첨4〉 2023 국악방송 프로그램별 참여 인력 현황(라디오)

연 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	창호에드린 햇살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1		1		1
		총합계	1		1							1	2	3		4
2	국악산책	PD	1		1											1
		작가														
		조연출														
		기술	1		1											1
		총합계	2		2											2
3	문화시대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1		1											1
		총합계	1		1	1		1					2	2		4
4	바투의 상사디아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기술	1		1											1
		총합계	2		2								1	1		3
5	노래가 좋다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1	1		1
		총합계										1	3	4		4
6	맛있는 라디오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1		1		1
		총합계		1	1							1	2	3		4
7	FM국악당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총합계		1	1								1	1		2

연 번	프로그램	업무(팀)별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총합계	
			남	여	계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8	글과 음악의 온도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기술												1	1	1
		총합계												3	3	3
9	최고은의 밤은 음악이야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1			1	1
		총합계		1	1							1	2	3		4
10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총합계		1	1									2	2	3
11	연구의 현장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기술														
		총합계	1		1									1	1	2
12	음악의 교차로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1	1	1
		기술														
		총합계		1	1									2	2	3
13	고전, 지혜로 만나는 세계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기술														
		총합계		1	1									1	1	2
14	국악방송에서 전하는 문화소식	PD		1	1											1
		작가												1	1	1
		조연출														
		기술														
		총합계		1	1									1	1	2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2

전**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사무국장)

이제는 답을 들어야 한다

전**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사무국장)

1. 복지부동, 방송사의 고집

방송사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2020년 이후, 촬영감독, MD, 아나운서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2021년 3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여러 방송작가가 노동자성 인정 판정을 받았다.

2022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작가가 업무를 하는 중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겸직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여러 판결이 방송사에 재갈을 물리나 기대했지만 방송사는 판결을 사실상 따르지 않았다.

KBS는 노동자성이 인정된 70여 명의 작가 중 9명이 무기계약을 했고, MBC는 ‘방송 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해 ‘근로자성을 지닌 작가’의 재발을 방지하려한다. SBS 또한 판결 뒤에도 2년 미만 기간제 별정직으로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도 방송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방송계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적 모순과 불합리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그간 시민단체와 개인이 문제 제기한 몇몇 방송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에 소환된 방송사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본 다른 방송사들은 그들의 길을 고스란히 따를 것이다.

이번에 문체부에서 실시한 ‘문체부 방송 3사 프리랜서 활용 실태와 개선방향’의 결과가 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문제부 방송 3사의 프리랜서 ‘노동자성 문제’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은 소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비중이 적지 않은걸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지시감독 지표들 중 약 80% 이상 차지하는 응답이 12개 중 6개로 나온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프리랜서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5.1%에서 2023년 52.3% 늘어났다. KTV는 만 보면 1년 사이 두 배나 증가했다.

2. 문제부 방송 3사 내부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

이번 조사결과에서 또 한 번 드러난 것은 방송사의 ‘선택적 지시’다.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의 업무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상위 세가지는 촬영, 조연출, 작가이고, 제작관련자에게 본인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한다’는 응답비율은 KTV(69.7%), 아리랑TV(55.2%), 국악방송(53.3%)순이다.

이는 방송 아이템을 잡는 최초의 작업부터 촬영 방향까지 모두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결코 지시하지 않는다.

연장·야간 수당, 성과급·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고, 아플 때에도 무급 휴가만이 허락되는 수준이다.

문제부 방송 3사 프리랜서 소득 평균이 221만 원이다. 연장근무, 실업급여, 퇴직금도 없으니 방송사 비정규직들은 일은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 변화가 없는 이상 저소득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힘없는 개개인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방송사만 이득을 챙기는 현상을 ‘관행’이라 부르며 지켜가고 있는 것이 방송사의 맨 얼굴이다.

현장에서는 늦은 퇴근으로 택시비를 주는 것을 아주 큰 복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마저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때문이다. 연장 근무, 야간 근무가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은 한명이 소화할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사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 그때 그때 ‘택시비’로 땀땀하고 있는 것이다.

과한 업무량의 문제는 아플 때 더욱 크게 드러난다. 문제부 방송 3사가 제시한 ‘무급 휴가’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 결국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직원이 그 또한 떠맡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택시비’다.

3. 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외주제작사 현실

이번 조사 결과 문체부 방송 3사는 대체로 서면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표준 계약서와 문체부 표준계약서, 일반 도급·위탁·용역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노동 환경을 보면 그 계약서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면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많다. 지난 2022년 정의당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주 제작사에 소속된 독립피디의 경우 35.6%가 구두 계약으로 일하고 있고, 작가 또한 24.9%가 구두계약만 체결한 상태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외주제작사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 계약서 체결은 15.5%에 그치고 있다.

이는 문체부 방송 3사에서 일어나는 불이익에 더하는 불이익이 외주제작사 비정규직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방송 작가의 경우 임금이 지연된 경우가 33.2%, 체불된 경우가 2.2%, 지연과 체불을 다 겪은 사례가 8.6%이다. 독립피디의 경우 업무 중 다치면 58.6%가 자비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 행사 등을 프로그램이 결방할 경우 작가는 67.1%가 임금 전액 미지급, 독립피디는 42.5%가 전액 미지급이라고 답했다. 노동에 비해 적은 인건비가 한 번 더 깎이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도 있었고, 방송계를 떠난 이들도 적지않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사 비정규직들은 최소한의 보장조차 약속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현장의 물음에 답을 줘야 할 시기다.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3

김유경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거대해진 방송 비정규직 백화점 정상화를 위한 관계부처의 역할

김유경 (공인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1. 들어가며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지상파 방송 3사(KTV, 아리랑TV, 국악방송)에서 근무하는 방송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현재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의 왜곡된 인력 구조를 새삼 적나라하게 재확인시켜준다. 지난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고용노동부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2021 용역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시사교양국과 보도국 총 2,711명 중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는 1125명(41.5%)에 달했다.¹⁾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 대상인 방송3사는 정부 부처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 방송사업에도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의 비중이 지상파 3사보다 높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KTV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프리랜서 인력이 증가했다.

이하 토론문에서는 이처럼 방송사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게 된 배경에 관계 부처들의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 제도상의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방송계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는 최근 2~3년간 무수한 개별 노동자들의 법률 투쟁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여전히 관계 부처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문체부 산하 방송3사의 프리랜서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1) 2022. 05. 04. 미디어오늘, ‘지상파3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 프리랜서 인력 현황 최초 공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3010>

2. ‘무늬만 프리랜서’ 양산의 도구로 악용되는 문제부 ‘표준계약서’

(1) 문제부 표준계약서가 등장한 배경 및 목적

2019. 6.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은 도입부에서 “기 제정된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6종)의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하고 형식적인 사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만큼 2017년 말 문제부가 제정, 현장에 배포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하더라도 다수 조항을 방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부는 해당 지침에서 표준계약서의 종류로서 ‘근로계약’, ‘하도급(방송작가의 경우 ‘집필’), ‘업무위탁’ 등을 제시하고, 방송 스태프, 방송 작가 등의 실제 일하는 모습이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에 비춰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스태프 등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방송사 등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노동청, 법원 등을 상대로 법률 대응을 통해 해결하라고 안내하였다. 현실적으로 계약 체결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용자 방송국에 대해 프리랜서 개인이 동등한 당사자의 위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관철시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프리랜서 위탁계약을 사실상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온 이유다.

수 년간 문제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지침을 근거로 방송사들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결과 실제 방송 제작 현장에서 문제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2) 누가, 어떻게 문체부 표준 계약서에 서명하나

문체부의 표준 계약서 제정 이후 해마다 국정 감사에서는 지상파 방송3사의 서면 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의 못매를 맞은 일부 방송사들은 몇 년째 버티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한날 한시에 한 방송사 내에서 프리랜서로 이미 채용되어 근무중인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당연히 개별 노동자의 근로실질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프로그램명’과 ‘보수’외에 거의 동일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표준 계약서는 그 명칭만 ‘방송작가 표준 집필 계약서’, ‘방송 출연자 표준 계약서’ 등으로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 변형되었을 뿐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문구 수정 등을 요구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있지만 노조가 없거나 개인이 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특히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위탁, 도급, 용역 계약서’라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약서가 체결되다보니 당연히 계약 체결 당사자들의 근로실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계약서상 명시된 각종 조항은 사문화된 문구이거나 오히려 추후 법률 대응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장치로 악용되기 일쑤였다.

(3) 지침 권고 4년, 현장에 난무하는 형식적이거나 오용되는 계약서들

문체부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배포 이후 현장에는 어떤 형태의 계약서들이 통용되고 있을까. 우선 문체부의 표준 계약서 지침은 어디까지나 ‘권고’이므로 여전히 지역 방송국 등에는 서면 계약서를 아예 미체결한 곳들도 적지 않다. 수도권 외 지역방송사들의 경우 그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접해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문체부의 표준 계약서가 ‘무늬만 프리랜서’를 양산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근로실질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누가 보더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방송작가집필표준계약서’ 등에 의해 간단히 ‘프리랜서’로 사회적 신분이 둔갑해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최근 주목받은 방송작가들에 대한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사건’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조사 대상 방송 3사에서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종은 작가(43.3%)로 나타났다.

[참고] KBS전주총국 A작가 사례

KBS전주총국에서 생방송 시사 토론 프로그램 작가로 근무하다가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A작가의 경우 근속 5년째인 2020. 8. 방송사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당 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원고 집필 및 구성활동’이었고 사용자는 이를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구성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용역의 범위와 용역목적물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못박았다. 무엇보다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적시된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작가가 1년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KBS가 예술인복지법 시행,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국회의 지적 등 방송사의 방침 변경 등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그간의 관행과 달리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해당 작가가 서명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명확히 설시하였다(2022. 4. 12. 판정 중앙2022부해110 한국방송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통용되는 방송작가 표준집필 계약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체결되는지, 또한 해당 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함에도 노동자들을 간단히 해고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이와 유사한 계약서들이 최근 수 년간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괄적으로 체결되곤 했는데 특히 최근 근로자성이 인정된 다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모두 생방송 보도 또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작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방송 제작 현장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등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방송업종의 모든 프리랜서들이 모두 확일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근로자로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성이 중요하며 방송사의 논조, 최종 결정권자인 PD의 성향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기본 특성상 작가 또는 다른 방송 스태프들이 업무 내용을 정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방송 3사 모든 직종에서 ‘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4) 개선 방향

우선 문체부는 산하 방송사들의 계약서 작성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프리랜서 인력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했는데 KTV의 프리랜서 고용 증가는 2022년 48.9%에서 2023년 84.2%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보도 부문에서 일하는 작가 등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들 대부분의 근로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최근 토론자가 수행한 사건에서 KTV 보도부문 프로그램 담당 작가들이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였던 사건에서도 해당 작가들의 근로자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문체부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된 표준계약서 작성 자체만을 반복적으로 권고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실제 근로실질에 부합하는 계약 체결에 초점을 맞춰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표준 계약서 체결 의무를 넘어 적어도 근로자성이 뚜렷한 직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 등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축적된 법률 투쟁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방송업종의 특수성상 제작 현장의 정규직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다수 방송 비정규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3. ‘처분문서’를 근거로 소극 행정에 머무는 노동부 노동행정

(1) 노동자성 부정의 강력한 근거 ‘계약서’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서 사용자 방송사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이 중요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노동청 등은 ‘처분문서’로서의 계약서의 효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노동자성 부정의 강력한 근거로 삼고 있다. 노동자성 부정을 위한 근거로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근로 실질에 비하여 서면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만큼 가장 뚜렷한 ‘증거’는 없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지도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 최근 2~3년간 법원과 노동위가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근로실질을 상세히 살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이보다 한발 앞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성이 뚜렷한 방송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노동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 진정 등을 제기하면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사전에 지정하였는지’, ‘입사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등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면 그만인 징표들에만 매몰되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한다. 각 지청별 담당 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은 그야말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재량에 맡겨져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용자가 노동자와 서면 계약을 작성할 당시 근로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고의성 없음’을 ‘혐의없음’의 단골 근거로 삼고 있다.

(2) 근로계약 시정명령에 따른 후속 검토 절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이래 최초로 지상파방송 3사에 대한

동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시사 교양 작가 152명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분명 이례적인 사건이었으나 이후 각 방송사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작가 업무를 지속할 경우 고용 보장이 어렵다(=2년 미만 단기 계약 체결)’, 혹은 ‘행정직 등 타 업무를 선택할 경우 무기계약이 가능하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퇴사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작가는 3사를 합쳐 18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개별 근로계약에 행정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생략하였는데, 해당 사안은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원직복직한 A작가의 사안에서 “이미 작가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정직을 맡게 된 선례가 있다”는 근거로 악용되었다.

고용노동부의 당시 근로감독은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의 사망 이후 대책위원회의 끈질긴 투쟁 국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당연히 근로감독의 취지는 ‘원래부터 근로자로서 고용되었어야 할 무늬만 프리랜서 작가’들에 대하여 고용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작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3) 개선방향

이같은 의미에서 고용노동부는 이후에도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이후 방송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살펴 왜곡되고 편법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각 지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감독관들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석 조사시 통용되는 문답서상 지극히 형식적 요소에 불과한 질문들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실질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행정고발토론회, 방송 노동자들의 외침 외면하고 회피하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검찰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했던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같은 실태에 대해 노동자성 판단 지침(매뉴얼) 마련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관련된 작업이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4. 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행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지난 9월 1일, 방송의날에 즈음하여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이 출범했다.²⁾ 엔딩크레딧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2023년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관련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지상파 방송 재허가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허가 대상 ‘DTV 및 라디오’에 대해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제출, △그 이행실적(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따를 것 등을 부여한 한 바 있다.³⁾

그러나 이후 방통위의 이같은 조건 부과에 대하여 재허가 대상 방송사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대신 개별 노동자들의 법률 대응에 대하여 각종 ‘꼼수’로 대응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듯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다수의 노동자성 인정 사례 이후에도 방송사들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용 구조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에서 3년 전 제시한 부과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나아가 비정규직 인력 문제를 보다 강력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방통위가 방송사들의 허가권을 쥐고 있는 주무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다. <끝>

2) ‘엔딩크레딧’은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무법인 돌곶,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셋별 노무사사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직장갑질119)가 모여 결성한 노동인권 사회단체로 지난 9월 1일에 출범함. 현재 CJB청주방송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음.

3) ‘엔딩크레딧’이 9월 19일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 발췌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4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5

권순호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사무관)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6

김보경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문체부 산하 방송3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